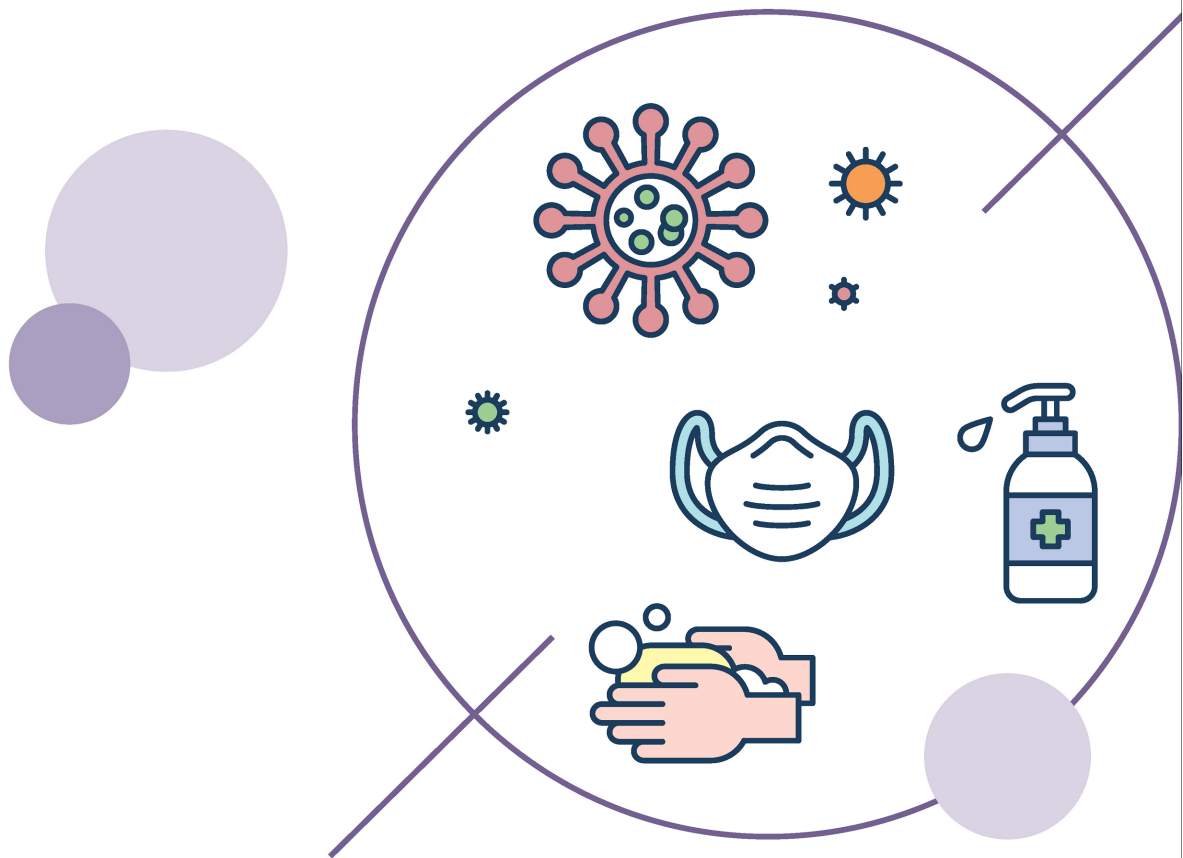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 코로나19를 중심으로 -

2021. 4.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 코로나19를 중심으로 -

CHAPTER I. 개요

- 1. 장애인 고려 필요성 3
- 2. 감염병상황에서 장애 특수성 4
- 3. 장애인 대상 고려사항 6
- 4. WHO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장애인 고려사항 14

CHAPTER II. 코로나19 대응단계별 세부 고려사항

- 1. 개요 17
- 2. 지자체 세부 고려사항 18
- 3. 관련 주요기관 세부 고려사항 25

목 차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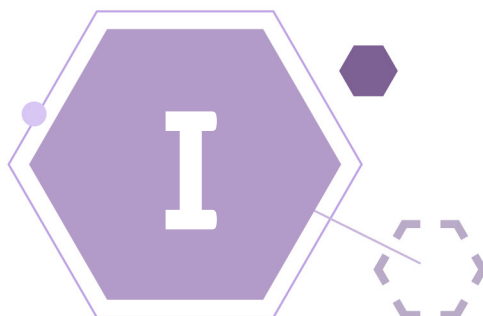
CHAPTER Ⅲ.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별 대응 지침

1. 장애인복지서비스별 대응 개요	31
2.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공통 대응 지침	34
3. 일상생활 지원	42
4. 건강 및 의료 지원	45
5. 그 밖의 지원	49

부 록 장애인 코로나19 안내서 등

1. 장애인 코로나19 안내서(3판, 배포용)	55
2. 시각 지원판/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 사용 매뉴얼	79
3.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 코로나19 대응 안내	95
4. 코로나19 장애인 지원 사례 및 추진현황	109

CHAPTER.



개 요

I 개요

동 매뉴얼은 감염병 상황에서 지자체장이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감염병 대응 지원 계획 수립하고 지원하는 자료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시함

1 장애인 고려 필요성

- 장애인은 아래의 특성으로 **감염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일반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 더해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필요함**
 - (감염 위험 높음)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일반적 예방수칙을 이행하기 어렵고, 보조인 등의 일상적 도움이 필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려움**, 장애인보조기기 및 점자 사용으로 **물리적인 접촉 발생** 등 감염 위험이 높음
 - (감염 피해 심각) 감염시 기존 건강상태, 특히 호흡기 기능, 면역체계 기능, 심장질환 또는 당뇨병과 관련된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의료서비스의 접근에 어려움이 있음**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신속히 처리했던 **장애인 지원방안**을 일반화하여 종합 정리함으로써, 향후 **감염병 상황에서의 활용 지원**
 - 아울러, 노인, 임산부, 영유아, 이주민 등 재난 취약계층에서 참조할 만한 사례를 지원
- 감염병 재유행 대비 장애인 대상 코로나19 대응 평가체계 구축, 사례 관리 데이터 구축 등 필요

2 감염병상황에서 장애 특수성

장애인의 코로나19 감염 취약 특성은 ‘의사소통제약’, ‘이동제약’, ‘감염취약’, ‘밀접돌봄’, ‘집단활동’ 으로 구분

- **(의사소통제약)** 시각정보습득이나 음성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거나, 언어적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의미적 소통에 어려움을 가져 충분한 정보 습득과 이해 부족 발생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인 등
- **(이동제약)** 와상, 휠체어 이용 등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하여 조력자의 도움 필요, 시각장애,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가 있는 경우 보행은 가능하지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 **(감염취약)** 질환 및 사고로 인해 장애상태가 고착되어, 기저질환 보유, 혈액 투석, 재활 등 정기적 치료·처방 등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함
 -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등

〈코로나19 대응 지침 고위험군에 포함된 장애유형〉

내부기관의 장애	일반 코로나19 지침 고위험군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장장애 ○ 심장장애 ○ 간장애 ○ 호흡기장애 ○ 장루·요루장애 ○ 뇌전증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 65세 이상 ○ 만성 기저질환 :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치료 암환자, 면역 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HIV 환자 ○ 특수상황 :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 입원환자 :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I. 개요

- **(밀접 돌봄)** 가족, 보조인 등 돌봄이 필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어렵고, 대면활동 제약 등으로 **돌봄 단절시 일상생활 곤란**
 - 활동지원, 장애인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서비스가 단절될 경우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문제** 발생
- **(집단 활동)** 장애인 주거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집단생활**, 각종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제공 기관을 통한 **단체 서비스 이용의 특성**을 지님
 - 장애인 주거시설, 장애인복지관,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직업재활시설 등 **주요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장애인

감염병(코로나19) 장애인 취약특성

① 의사소통제약, ② 이동제약, ③ 감염취약, ④ 밀접 돌봄, ⑤ 집단 활동

〈장애유형별 재난(감염병)에 대한 주요 취약성 요약〉

장애유형	의사소통제약	이동제약	감염취약	밀접돌봄	집단활동
지체					
시각	시각정보				
뇌병변					
청각언어	음성의사소통				
발달(지적, 자폐성)	의미의사소통				
내부기관의 장애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3 장애인 대상 고려사항

감염병 유행 시 장애인의 취약특성을 고려하여 정보접근성 제고, 이동서비스 지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및 필수 의료지원 강화, 돌봄 공백 방지, 장애인 시설 이용시 감염예방 및 서비스 유지 등 필요

1) 감염병 정보접근성 제고

● 주요 대상

- 언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수어 등의 지원이 필요한 **청각·언어장애인**
- 시각으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음성(텍스트파일)으로 관련 정보의 전달이 필요한 **시각 장애인**
- 언어적 소통은 가능하나 전달하는 정보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 이동의 어려움이 있는 **지체장애인, 내부기관의 장애인** 등

● 대상별 고려사항


- **(공통)** 시·도내 지원이 가능한 선별진료소(병원)를 지정하고, 장애인 요청(예약 등) 시 해당 선별진료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등 지원
- **(정보제공 강화)** 감염병 상담서비스 관련 1339 카카오톡·영상 수어 상담 지원 안내 및 홍보, 지자체별 코로나19 관련 정보 제공시 음성변환출력(텍스트파일, QR코드 등)이 가능한 코로나19 인쇄물 형식으로 제공
- **(시각장애인)** 감염병 관련 인쇄물 배포시 문자 인식이 가능하도록 **음성변환출력*이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 온라인 제공 시 텍스트 파일 포함, 점자 읽기 가능한 **항균코팅필름** 설치

* QR코드를 포함하여 인쇄, 중요 정보 문자 발송 시 휴대폰 내 음성지원을 위하여 45자 이내 발송 권고

I. 개요

-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언어와 관계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과 읽기 쉬운 글로 표현하는 등 감염병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 * '능동감시자', '의사환자' 등 새로운 단어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어려운 단어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림판 등 활용

● **감염병 정보접근성 제고 코로나19 지원 사례**

구분	사례 내용
수어통역	○ (청각장애) 코로나 관련 중앙 및 지자체 브리핑 시 수어통역 제공, 방송 사업자 재난방송시 수어통역 및 화면해설 제공
음성변환출력 지원	○ (시각장애)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관련 인쇄물 배포시 QR코드 포함
새로운 단어와 코로나19 정보를 쉽게 설명	○ (발달, 뇌병변 등) 시각지원판 등 코로나19 관련 주요 설명자료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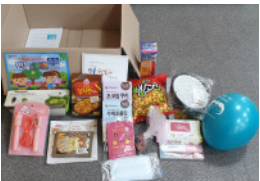
2) 이동서비스 지원

- **주요 대상**
 -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 **휠체어 이용 및 외상장애인** 등 자력 이동이 불가능해 조력자가 필요한 대상 우선 고려 필요
 - **신장장애인은** 감염 시 사망률이 매우 높아 투석을 위한 병원이동 지원 필요

● 고려사항

- (공통) 시·도내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선별진료소(병원)를 지정하고, 장애인 요청(예약 등) 시 해당 선별진료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 (이동지원) 자택-의료기관-격리장소 등 이동 필요시
 -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신장장애인은 휠체어 탑승가능차량(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
 - * 유증상자 이송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방역처리, 운전자 등 체계 마련
 - 외상장애인은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 지원
 - 시각장애인은 보호자 동행 또는 이동지원 인력을 지원하여 차량 탑승 전-후 목적지까지 이동 지원
- (이동제약에 따른 생활지원) 식료품 등 생필품 및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 구매 지원

● 이동서비스 지원 코로나19 지원 사례

구분	사례 내용	
확진자 격리시	○ 구급차 이용한 지정병원, 생활치료센터 이송 지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 전동휠체어 이용자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 코로나19 방역처리 이동체계 마련	
이동제약에 따른 생활지원	○ 생필품 방문지원(자치단체) - 자가격리 장애인 생필품지원	
방역용품 현장지원	○ 장애인 거주시설 마스크, 손소독제 보급 ○ 장애인 마스크 무상보급 사업을 위해 마스크 배분	

3) 감염병 예방 관리 및 필수 의료지원 강화

● 주요 대상

- (우선 고려 대상) 고위험군에 속하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장애인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뇌전증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대상별 고려사항

- (병원지정 및 우선조치) 우선 고려대상은 65세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 따라서 장애인 확진자가 입원할 수 있는 의료 지원·생활지원 병동·병원 확보하고, 확진 시 확보 병상 우선 조치
 - * 가족 동시 확진 시 가능한 같은 병원 및 센터 입원·입소
- (조사대상 유증상자 지정) 고위험군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이 주요 임상증상*을 보일 경우 조사대상 유증상자(무상검사)에 포함하여 코로나19 검사 실시
 -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건강체크 지원) 장애인 가구 및 활동지원사에 대한 건강체크 및 방역물품 지원
- (중단없는 혈액투석 지원) 신장장애인은 진료병원 진료 일시중단 또는 코로나19 확진 시 혈액 투석가능 병상 파악 및 안전한 의료지원 연계
 - ex) 지역 내 투석가능 병원, 인원, 시간 안내 및 격리자 시차투석, 요일지정 투석 등 방안마련
- (약복용 지원) 현재 복용중인 약은 2주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비대면 진료 및 처방약 대리수령 등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지속 제공
- 장애인 대상 방역물품 우선 지원 및 구매 편의성 제고

● 시·도 병상 배정 관리체계 구축

- (개요) 시·도는 지역 내 가용 병상 및 병원, 의료자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병상 배정을 위한 환자관리반 및 감염관리 기능 신설
 - 시·군·구는 확진환자 중증도 평가기능을 갖추고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위험 요인 보유자를 신속 보고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
- (자원 파악) 시·도 환자관리반은 공공병원, 민간병원* 보유 음압병실 및 1인실과 최중증, 중증환자 진료 중환자실 및 장비**,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수요 발생시 *** 즉시 사용하기 위한 사전 대비 계획 수립 병행 필요
 - * 국가지정 격리치료병상 외 감염병전담병원, 지역거점의료기관, 국립병원, 경찰병원, 보훈병원, 군병원, 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파악 필요
 - ** ECMO(체외막산소공급,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CRRT(지속적 신대체 요법,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등 보유의료기관 및 개수
 - *** BF인증 등 장애인의 접근성과 관련된 내용 미리 파악
- (의료시설 확충) 장애인 확진자 지정 의료지원·생활지원병동·병원 확충
 - * 가족 동시 확진 시 가능한 같은 병원 및 센터 입원·입소

● 감염병 예방 관리 및 필수 의료지원 강화 코로나19 지원 사례

구분	사례 내용
고위험군	○ 내부 장애인은 기저질환자로 분류, 병원 우선 격리 등 질환 특성에 따라 방역 매뉴얼 등에 반영되어 지원
필수의료 제공	○ 제3자 처방, 전화 처방 등 비대면 진료 임시 허용 ○ 감염병 의료대응체계 내에서 격리환자 투석 지원 등
방역물품 지원	○ 장애인 거주시설 마스크, 손소독제 보급을 위해 국비 지원

4) 돌봄 공백 방지

● 주요 대상

- 일상 및 사회생활 제약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등 일상 생활 지원서비스* 이용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전문 어린이집 이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등

● 대상별 고려사항

- **(활동지원)** 추가적인 급여 제공, 제공인력 풀 확대 등 장애인당사자 또는 돌봄 제공자* 격리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추진**

* 활동지원사 등 서비스 제공 인력의 백신접종으로 인한 휴가 발생시 대체인력 등 대응방안 마련

- **(돌봄지원)** 가족돌봄, 긴급돌봄 등 장애인시설 이용중단(일시폐쇄), 보호자 부재 등의 상황에서 **돌봄 공백에 대응**

ex)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 제공,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 확대 등

- **(생활지원)** 돌봄 및 이용서비스 단절 등에 따른 **가정생활 지원 방안** 마련·시행

ex) 낮 활동 꾸러미 등 가정 내 돌봄부담 경감 지원 등

- **(돌봄제공자)** 돌봄 투입인력 개인보호장비 지원, 보호·방호방법, 식사·화장실 지원 등 밀접지원 방법 교육 실시 후 투입

ex) 방호복, 장갑 등 이용방법, 근무시간, 화장실 이용 방법 및 이후 방역방법 등

● 지자체 협조 사항

- **(현장지원)** 종사자 및 대상자 관련 안전에 엄중하게 대처하되 불필요한 불안감에 서비스 제공 거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 수행기관 업무 지원 확대 필요

- (격리시설 마련) 사회복지시설에서 다수의 자가격리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 하여 격리시설(1인실 원칙,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장애인화장실 등 구비)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시설휴관) 지자체와 시설이 협의하여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침 사항

- (방문조사) 신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자 선정조사 실시를 위해 자택을 방문할 경우 조사자는 반드시 예방수칙을 숙지 하고 마스크 착용 등 예방조치 준수
- (교육) 각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주간활동·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 등을 연기하도록 권고

● 돌봄 공백 방지 코로나19 지원 사례

구분	사례 내용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않던 장애인이 복지관 휴관 등의 사유로 긴급돌봄이 필요할 경우 긴급활동급여 제공(월120시간) ○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 원래의 급여량과 무관하게 24시간 활동지원 급여 제공(활동지원사를 통한 돌봄이 어려워 가족이 돌볼 경우, 가족에게 급여 지급) ○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현장 요구를 반영하여 제공인력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완화 		
돌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부재 시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월 20시간) 추가 제공 ○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돌봄 부담완화를 위해 가족돌봄비용 지원 대상 장애인 자녀 연령 18세 이하로 확대 ○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체계 구성(대구사회서비스원) 		
	구분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1유형	(미확진자) 코로나19로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된(월) 자	복지시설 생활교사/정서지원, 식사도움, 장보기 및 약품대리수령, 청소 등 일상생활 지원(8시간)
	2유형	(미확진자) 자가격리 등으로 긴급돌봄서비스 필요하게 된 자	자가(병원)격리자에게 장보기, 물품전달 등 외부활동 지원(8시간)
	3유형	(미확진자) 자가격리 등으로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하게 된 자	자가격리자와 함께 격리생활을 하면서 내부생활 지원(24시간)
	4유형	(확진자) 확진자의 병원 원으로 긴급돌봄 서비스 필요하게 된 자	확진자의 병원생활 지원(8시간) * 현장경험이 있는 요양보호사, 간병사 우선
5유형	(미확진자) 어린이집 이용 어린이 중 전담 의료기관의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자	자가격리자와 함께 격리 생활하면서 내부생활 지원 (어린이집이용 아동 중 격리자)	

5) 장애인 시설 이용시 감염예방 및 서비스 유지

● 주요 대상

- 거주시설, 복지관 등 시설 이용 장애인

● 고려사항

- **(복지시설 감염예방)** 돌봄체계 중단으로 인한 가족 돌봄이 힘든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 감염예방**
 - * 복지관 등 감염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인원 적정화, 운영방식 유연화 등 조치
 - *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종사자 대상 PCR 검사 지속적 실시
- **(필수인력 유지)** 필수 서비스 유지를 위한 **유관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긴급 돌봄서비스 인력투입, 사회복지시설 대체 인력(퇴직자, 봉사자 등) 우선 투입
 - * 긴급돌봄 등 유지, 주간활동 제공기관 휴관 시 활동지원서비스 대체 이용 등
- **(운영중지 대비)** 특히, 장애인 생활시설의 집단감염 등으로 운영이 중지될 경우 **임시시설***, 주변 생활치료센터, 병원, 활동지원기관 협약 등 지역 대응체계 마련
 - * 임시시설 : 1인 1실, 화장실 등이 갖추어진 주거 환경지원 및 인력 재배치

● 장애인시설 감염예방 및 서비스 유지 코로나19 지원 사례

구분	사례 내용
감염예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단체 대상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방역관리지침 등 전파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성을 부여 등 -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연락체계 구축
필수 서비스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이용시설 휴관 권고 및 휴관 시 돌봄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필수서비스 제공을 위한 긴급돌봄 등 유지 요청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기관 휴관 시 활동지원서비스 대체 이용 조치 및 비용 청구조건을 완화하여 제공기관의 정상 운영 지원

4 WHO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장애인 고려사항

●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행동수칙

- 코로나19 노출 가능성 감소
- 단절없는 장애인 돌봄과 지원 계획 수립
- 코로나19 확진시 대비
- 가족과 보조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

● 정부 지원 대책

- 장애인의 공공보건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지원
- 장애인과 그 지지체계에 대한 선별적 조치 시행
- 장애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한 선별적 조치 시행
- 고위험 장애인의 지원체계 마련
- 장애인 응급지원체계 마련

● 보건의료종사자 행동수칙

- 코로나19 의료 현장의 접근성, 경제성, 포괄성 보장
- 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의료 제공

● 서비스제공기관 행동수칙

- 인력 감소 상황 대비 계획 수립
- 장애인과 장애인 지지체계와 자주 소통
- 장애인 서비스 제공시 코로나19 노출 가능성 최소화
- 복합적 요구사항을 가진 장애인에 충분한 지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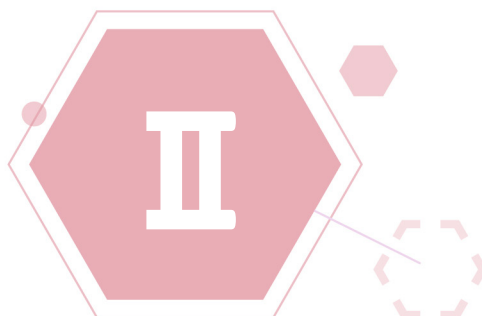
● 기관 설정에 대한 조치

- 코로나19에 대한 노출 감소
- 기관 내 코로나19 감염에 대비
- 장애인 거주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 제공
- 코로나19 발생 시 거주 권리 보장

● 지역사회를 위한 수칙

- 주민이 지켜야할 기본 보호 대책
- 기관의 유연한 작업 준비 및 감염 관리 조치
- 취약계층을 위해 상점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장애인의 가족, 친구, 이웃 등과의 연계

CHAPTER.



코로나19 대응단계별 세부 고려사항

II 코로나19 대응단계별 세부 고려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9-5판의 절차적 핵심을 추출했고, 지침내용에 장애인의 별도 고려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였으며,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다음 내용을 탄력적으로 적용

1 개요

- (코로나19 대응단계) 예방, 감염 등 신고·보고, 진료검사, 치료·사후관리 등 총 4단계



[코로나19 대응 단계]

2 지자체 세부 고려사항

가. 예방

● 관리/모니터링

(1) 해외 입국자 관리

- 검역소 : 입국 검역시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 특별 검역신고서 제출 등 특별입국절차 수행
- (유증상자) 검역소에서 입국시 유증상자에 대한 검체채취 등 수행
- (무증상자)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시설격리, 장기체류 외국인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및 자가격리 실시
- * 출발국가 및 위험도 등에 따라 세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2) 자료 관리

- (기본방향) 접촉자 관리 종료 시까지 최초 조사 참여한 시·도 역학조사관, 시·도 접촉자 DB 관리자가 자료 확인·검증 지속

(3) 대상자모니터링

- (모니터링) 최대 잠복기 동안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하는지 확인
- 모바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행정안전부)또는 자가진단앱(관할보건소)으로 모니터링
-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환자의 접촉자 및 입국자, 자가진단앱: 입국자 중 자가격리 면제자



검사결과 제공시 장애 고려사항

- 검사 대상자가 **시각장애인**인 경우 **유선**으로 결과 제공
- 검사 대상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 **문자** 또는 **영상수어상담**(129 콜센터, 손말이음센터 연계)을 통한 결과 제공

● 교육·홍보·협력

- (자제해야 할 일) 외출, 타인과의 접촉(식사포함), 대중교통 이용, 다중이용 시설 이용 등
- (해야 할 일) 호흡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강조, 기침 예절 준수,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국가 방문력/환자와 접촉유무 알리기 등
- 증상 발생 및 악화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 교육·홍보 관련 장애 고려사항

- 발달장애인의 코로나19 관련 교육·홍보를 위해 「부록」장애인을 위한 코로나19 안내서」(p.55) 활용

나. 감염 등 신고·보고

● 전국 모든 시·도 환자관리반

- (개요) 시·도는 지역 내 가용 병상 및 병원, 의료자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병상 배정을 위한 환자관리반 및 감염관리 기능 운영

* 의료자원 관련 장애 고려사항

- 시·도 환자관리반은 지역 내 장애인 감염자 발생을 고려하여, 이동지원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자원을 확보 및 관리

다. 진료·검사

● 진단검사

- (검사장소)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 실시



진단검사 시 장애 고려사항

- 검사 대상자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시각·청각·발달장애인 등)인 경우 「부록」 시각 지원판/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 사용 매뉴얼」(p.79) 활용

라. 치료 및 사후관리

● 치료 과정에서 필요 돌봄인력 투입(대비)

- (목적) 입원, 자가격리 등의 과정에서 장애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돌봄인력 투입을 위한 인력 구성 및 필요시 투입
-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노인장기요양 등 복지서비스 이용 중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발생자
- (지원내용) 일상생활 및 외부 활동 지원, 위생관리 지원 등 돌봄서비스 업무
- 서비스 내용

돌봄유형	서비스 내용
재가방문 지원	○ 보호자의 부재로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위기자 재가방문 지원
격리 동반입소	○ 확진자 접촉 등으로 인한 격리시설 입소자 동반입소 지원 ※ 지정격리 시설, 거주자 분산 시설 등
확진자 격리 동반입소	○ 코로나 확진 중증장애인 전담병원 입원 시 돌봄 지원 ※ 의료기관 내 식사보조, 이동보조 등 돌봄 필요자 돌봄업무 보조
거주시설 대체인력	○ 거주시설 내 확진자 발생시 거주자 분산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 격리대상 통지

- (최초 인지 보건소) 격리 통보 및 검사 안내,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 신속한 조치를 위해 유선, 문자 등으로 격리대상 사실 통보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최초 방문 및 안내사항 설명, 격리통지서 및 생활수칙 안내문 교부, 14일간 격리 및 능동감시



검사결과 및 정보 제공시 장애 고려사항

- 입원치료 통지 대상자가 **시각장애인**인 경우 유선으로 결과 제공
- 입원치료 통지 대상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 문자 또는 영상수어상담(129 콜센터, 손말이음센터 연계)을 통한 결과 제공
- 입원치료 통지 대상자가 **발달장애인**인 경우 「부록」장애인을 위한 코로나19 안내서」(p.55) 활용하여, 격리 시 생활수칙 및 지원 등을 설명

● 병원 및 시설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자가치료)

- (치료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른 자가치료 대상자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 참조



자가치료 관련 장애 고려사항

- 자가치료를 인해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발생시, 「Ⅲ. 주요 장애인 서비스별 대응 지침 中 3. 일상생활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p.42)을 참조하여 돌봄 공백 최소화

●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입원치료) 감염병환자 환자 등에 대한 감염병관리기관 등 의학적 처치

- (치료장소) 감염병환자등의 중증도 등에 따라 치료 장소를 정하며, 병원치료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 코로나19 대응지침 9-5판 [부록 6] 환자 초기 분류와 병상 배정 참조



입원치료 관련 장애 고려사항

- 시설 또는 병원격리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발생시, [Ⅲ. 주요 장애인 서비스별 대응 지침 中 3. 일상생활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 (p.42)을 참조하여 돌봄 공백 최소화

● 병상 배정 및 운영

- (병상배정요청) 보건소는 시·도 환자관리반으로 연락하여 중증도 분류와 가용 병상 배정 요청

- (중증환자) 중증도 분류 후 고위험군 대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즉각 병상 배정 후 의료진 진료 시행
- (입원대기 중 조치) 확진환자의 의식 수준, 연령, 기저질환(만성 질환, 장기 이식 등) 등 고위험군 여부를 확인, 입원 전까지 모니터링 지속 실시하며 중증 입원병상으로 입원

* 해당 지자체는 24시간 상담체계 구축 운영



병상 배정 및 운영시 장애 고려사항

- 지자체별 24시간 상담체계 구축 운영
- 상담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 문자 또는 영상 수어 상담(129 콜센터, 손말이음센터 연계)을 통한 정보 제공

● 병원 이송 및 전원

- (이송) 배정된 병상으로 이송

- 이송 시 의사(확진)환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유지, 이송요원은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 병원 이송 및 전원 시 장애 고려사항**

- 대상자가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신장장애인**인 경우 **휠체어 탑승가능차량(특별교통수단)** 방역처리 이동체계 마련 및 이송 지원

● **생활치료센터 입소**

- 시설 입소 대상자

- **(대상)** 입원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기준에 합당한 경우, 확진환자 중 중증도 분류에 따라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류한 경우
- **(배정)** 시·도환자관리반에서 중증도 분류와 병상 확인 후 생활치료센터로 환자 배정
- **(이송)** 시설 배정을 통보 받은 보건소는 의료기관을 통해 환자의 기본정보 확인, 구급차(보건소, 119) 등 이송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 격리시설 이용시 장애 고려사항**

- 시설치료(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가 **이동(휠체어 이용자 등),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지원서비스 고려해 입소시설 배정
 -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침(21.01)’에 따라 운영하며,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갖춰진 생활치료센터에 장애인 우선 배정*
- *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병원 병상 우선 배정

● **자가격리**

- **(자가격리 대상자)**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 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
- **(자가격리 방법)**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혼자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영유아의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할 수 있음



자가격리시 장애 고려사항

- 자가격리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발생시, [Ⅲ. 주요 장애인 서비스별 대응 지침 中 3. 일상생활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 (p.42).을 참조하여 돌봄 공백 최소화
- 대상자가 **발달장애인**의 경우 [부록 '장애인대상 코로나 19 안내서' (p.55) 활용한 알기쉬운 자가격리 정보 제공

● 확진 환자 격리해제 관리

-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 해제 여부를 판단하고 격리를 해제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시·도에 격리해제 보고 및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격리해제 정보 입력 및 격리해제 대상자에게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교육 실시

* 격리해제 기준 등 관련 세부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9-5판)' 참조



격리해제시 장애 고려사항

- 대상자가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신장장애인**인 경우 자택 등으로 귀가시 **휠체어 탑승 가능차량(특별교통수단)** 방역처리 포함한 이송 지원

3 관련 주요기관 세부 고려사항

가. 선별진료소

- **감염 등 신고·보고**
 - 사례정의에 따른 환자 분류
 - 환자의 정보 확인, 임상 증상과 징후 및 (필요시) 검사 등을 통해 사례정의에 따라 환자 분류

- **진료검사**
 - 자가문진표 작성 및 진료
 - 임상증상 및 문진 확인, 검사여부 결정, 사례정의에 따른 환자 분류
 - 간단 문진(비접촉 문진일 경우 개인정보구 교체 필요 없음)
 - 사례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 검체채취 안내, 사례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진료 필요시 일반진료(응급실, 외래 등) 안내

* 자가문진표 작성시 장애 고려사항

- 작성 대상자가 **시각장애인**인 경우, 문진표 대리 작성
- 작성 대상자가 **발달장애인**인 경우, 의사소통판 및 보조자 문진표 대리 작성
- 작성 대상자가 **와상장애인, 휠체어장애인**인 경우, 교통수단 지원
- 작성 대상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 문자 또는 영상수어상담(129 콜센터, 손말이음센터 연계) 등 활용

- 진료결과 안내

* 검사결과 제공시 장애 고려사항

- 검사 대상자가 **시각장애인**인 경우 유선으로 결과 제공
- 검사 대상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 문자 또는 영상수어상담(129 콜센터, 손말이음센터 연계)을 통한 결과 제공

나. 보건소

- 즉시 격리 조치가 필요한 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인지 보건소에서 관리 실시.
거주지로 이동 후 확진된 경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관리 실시

● 진료검사

- 격리대상 통지
 - (최초 인지 보건소) 격리 통보 및 검사 안내,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 신속한 조치를 위해 유선, 문자 등으로 격리대상 사실 통보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최초 방문 및 안내사항 설명, 격리통지서 및 생활수칙 안내문 교부, 14일간 격리 및 능동감시

* 격리대상 통지시 장애 고려사항

- 대상자가 시각장애인인 경우 유선으로 결과 제공
- 대상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 문자 또는 영상수어상담(129 콜센터, 손말이음센터 연계)을 통한 결과 제공
- 대상자가 발달장애인인 경우 '부록. 장애인 대상 코로나19 안내서' 교부

- 이송/전원

- (보건소) 병상배정을 확인한 보건소는 구급차 등 이송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의료기관으로 이송
- 환자에게 입원 안내(치료 절차, 격리의료기관 등) 및 입원치료 통지

* 이송/전원시 장애 고려사항

- 대상자가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신장장애인인 경우 휠체어 탑승가능차량(특별교통수단) 방역처리 이동체계 마련 및 이송 지원

다. 의료기관

-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시·도 환자관리반으로 연락하여 중증도 분류와 가용 병상 배정 요청

● 치료 및 사후관리

- **(생활 지원)** 병원 입원 장애인 지원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 연계하여 돌봄 가능
 - *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24시간 활동지원 제공 중(비수급자의 경우도 천재지변에 의한 사유에 준하여 긴급활동지원 제공)
- 보건소에 격리해제에 대해 통보할 때, 퇴원환자의 이동지원, 의사소통지원 필요여부 공유
 -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생활치료센터 배정 요청
 - 환자 입소 전 지자체를 통해 환자의 기본정보 사전 파악
 - 만약 연계된 의료기관 병상 부족시 실거주지 관할보건소에 통보하여 해당 시·도를 통해 병상 배정 요청
 - 퇴소(격리해제)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고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
 - 가능한 이동수단으로 자택 등으로 귀가 조치

CHAPTER.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별 대응 지침

Ⅲ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별 대응 지침

지자체의 상황 및 지침 변화에 따라 다음 내용을 탄력적으로 적용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별 분류

1. 장애인복지서비스별 대응 개요, 2.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공통 대응 지침, 3. 일상생활 지원,
 4. 건강 및 의료지원, 5. 그 밖의 지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공통 사항은 2. 공통 대응 지침에 명시
- * 제공 서비스별 분류의 경우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 코로나19 대응 안내(P.95)' 참고

1 장애인복지서비스별 대응 개요

- **감염병 정보 제공 및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 **(정보제공 강화)** 감염병 상담서비스 관련 1339 카카오톡·영상 수어 상담 지원 안내 및 홍보, 지자체별 코로나19 관련 정보 제공시 음성변환출력(텍스트파일, QR코드 등)이 가능한 코로나19 인쇄물 형식으로 제공
 - **(의사소통 지원)** '의사소통 도움 그림 글자판' 제작·배포 및 영상 전화기 구비, 손말이음센터·수어통역센터 활용 등 안내
- **자가격리, 이용시설 휴관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 방지**
 - **(긴급 활동지원)** 자가격리·확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지원 특별급여 등 제공* 및 발달장애인 대체이용 허용**
 - * 자가격리 활동지원 수급자 24시간 서비스 제공, 복지관 휴관 시 긴급활동급여(월 120시간), 보호자 부재 시 특별지원급여 제공(월 20시간) 등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기관 휴관 시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체 이용 허용
 - 장애인 학생 특별지원급여* 한시 제공(6개월)
 - * 월 한도액 560.8천원/월 40시간

-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도전적 행동을 동반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 1인 서비스 운영
-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대상 장애인 자녀 연령 확대
 - * 무급인 가족돌봄 휴가 사용에 따른 비용보존 긴급 지원금 지급대상을 장애인 자녀의 경우 8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
- **(긴급돌봄 실시)** 사회서비스원* 중심 긴급돌봄지원단 구축으로 서비스 공백, 가족 확진 등에 대응하여 긴급돌봄 제공 및 인력지원
 - * (설립·운영 지역) 서울,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경남, 충남, 강원, 전남
 - (사회서비스원) 가족·종사자 확진, 돌봄 제공자 자가격리 등으로 발생한 돌봄 공백에 대응하여 가정·시설에 돌봄인력 지원, 자가격리 등으로 인한 격리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원 미설치 지역) 고령확진자 등의 신체수발을 위한 돌봄인력* 모집 (인력풀 마련) 및 사전교육 실시 후 중수본에 연계, 지자체는 필요시 중수본에 돌봄인력 지원 요청, 중수본은 인력 매칭
 - * 식사, 목욕, 화장실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고령 및 장애인 확진자 돌봄
- **(돌봄인력 확대)**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자격요건 및 등록 절차 완화*, 온라인 교육, 대체인력 투입 등 실시
 - * 자가격리/확진된 수급자에 대해 활동지원사를 통한 지원이 어려운 경우 누구나 보건소 또는 의료 기관으로부터의 기본적인 안전교육 이수 후 활동지원사로 등록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복지관 등 이용시설 휴관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곤란한 발달장애인 대상 활동지원 가족급여 한시 허용
- **(상담센터 운영)**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 확진 시 행동요령 및 추가서비스 안내 등을 위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소)*를 설치·운영
 - * 당사자에게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번호 안내

● **장애인 복지시설 감염 예방 및 필수 서비스 유지 지원**

- **(시설운영 및 방역지원)** 코로나19 운영준수사항* 안내 및 방역물품 지원**, 주간활동 비용청구조건 완화로 제공기관 정상운영 지원

Ⅲ.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별 대응 지침

*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 입소자·보호자의 정서안정 조치 병행, 밀집도 최소화 등

** 장애아돌보미, 이용자 가정 등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방역물품 지원

- (관리체계 확립) 감염 발생 시 확진자·밀접접촉자 공간 분리

- 확진자는 감염병전담병원·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신속 이송하고, 접촉자는 임시격리시설*을 마련하여 이송

* 지자체에서 접촉자 격리 목적의 임시생활시설 운영 중

- (방역 강화) 선제적 진단검사(PCR) 실시, 확진자 발생시 중수본·방대본 현장 대응팀 즉시 파견 요청, 긴급돌봄인력 추가 확보

● 장애특성 고려 대책 강화

- (최신 방역지침 적용) 검체채취, 자가격리, 입원 등 과정에서 장애인 특성을 감안한 조치 실시

- 검체채취 또는 자가격리 시 보호자 동행 허용, 기저질환 치료여건 등 고려한 병실 배정,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혈액투석 지원) 지자체 내 의료기관에 신장장애인 자가격리자 등 투석 시 받을 수 있는 지원* 안내

*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및 본인부담금 지원, 신장장애인 등 자가격리자가 외래로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가산수가 한시적 신설 안내

● 장애인 이용 가능 병상 안내

- (장애인 전담병상 안내) 필요 시 장애인 전담병원인 국립재활원 안내

- (의료인력)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배치
(돌봄인력) 병상생활(식사도움, 배변 등)지원 위해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배치
- (병상수) 10개 운영중(상황에 따라 최대 23개 가능)

- (생활치료센터) 장애인용 객실 구비, 안전바 설치,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진 생활치료센터에 장애인 우선 배정

2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공통 대응 지침

* 각 항목별 세부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7판](2020.11.11.)' 및 '사회복지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통 대응 지침(2020.02.21.)'을 확인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사회복지시설 내 감염관리체계 구성

- **감염관리책임자(방역관리자) 등*** 지정,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성 부여, 근무자관리, 시설환경관리, 상황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유지토록 함

* 감염전담 담당자(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시설 내 위생물품 비치 파악 등) 등

- 종사자·이용자·입소자·방문자(자원봉사자 포함) 등 **명단 작성·보관**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권고)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4주 보관 후 폐기)

-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시도 및 시군구 소관부서-관내 보건소-소방서-선별진료소-의료기관

●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시설 이용자, 시설 종사자 등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 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 교육
-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여행력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주요 장소에 안내
- 코로나19 예방수칙,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및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 장소에 부착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및 본 지침 부록에 게시된 자료 활용

III.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별 대응 지침

- 환경 위생 관리
 - 시설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 손 세척제(액체비누, 알콜 70% 이상 손 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손 씻기 후에는 종이 타월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며 기침 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 강화(일 1회 이상)
 - * 문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하며,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소독
 - 시설 내 공기정화 및 환기 실시(일 2회 이상 자주)
 - * 환기는 상시로 하되, 에어컨 가동 시, 2시간마다 1회 이상 권고(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에어컨')
 - 시설 내 마스크, 체온계, 손 소독제 등 감염예방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
 -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은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 시설 입소출입 시 관리 강화
 - 시설 종사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 후 출입 안내
 - 시설 이용자·입소자·종사자 등 1일 2회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 ⇒ 시설 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 (1) 종사자는 관련 업무 배제, 방문자는 출입 금지
 - (2)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1)※(2): 유증상자 코로나19행동수칙 참조
 - (3) 입소자는 즉시 격리공간에 격리 조치
 - 다음과 같은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출근 또는 이용 중단할 것
 - 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하고 출근 중지
- ⇒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로 문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

(참고) 코로나19 행동수칙 中[유증상자]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①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 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 ② 해외 여행력 있는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2주간 출근 금지(재택근무, 온라인 근무) 또는 시설 이용을 중단할 것
 - 시설 관리자는 상기 ①, ②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휴가를 주거나 휴관(이용중단) 조치를 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 * (예시) 근로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어린이 등 : 결석 시 출석 인정
 - 시설관리자등은 시설종사자,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안내하고 관리
 - 시설 관리자 등은 가능한 영유아, 노인, 임신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용 자제를 안내하고 관리할 것
 - 의심환자 발생 시, 의심환자 대기 가능한 격리실을 시설 내 확보
 -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 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관련
 - *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하여 시설별 면회 수칙 마련할 것
 - 면회는 철저한 방역 조치 전제하에 실시하되, 하루당 실시 인원 제한,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된 지역의 면회자 제한하는 등 조치

Ⅲ.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별 대응 지침

* 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발령 시 대면 면회 금지하되, 입소자 정서적 안정을 위해 비접촉·비대면 면회 실시 권장

- 외출·외박도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 하에 가능하며 단계 격상으로 금지 원칙 적용 시 ①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개학에 따른 등교(원), ② 생계유지 등을 위한 직장 출퇴근 등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해당 입소자는 별도 격리 생활공간 마련·운영

* 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령 시 외출·외박 전면금지

- 이용자·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안내
 - 자원봉사자·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부득이한 사유로 예외적으로 방문 허용시 위험요인 파악, 발열 확인, 호흡기 증상 확인 후 출입 (마스크 착용 및 손위생 실시)
 - 출입명단 작성 후 출입,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출입 금지
 - 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에 철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소독제 사용, 충분한 손씻기) 실시 후 활동토록 안내
-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불필요한 출장 자제

● 접촉의 최소화

- 시설 종사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하지 않기
 - * 시설 내 종사자가 감염원이 되어, 이용자에게 전파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의 감염 관리에 철저
 - 종사자 방역수칙 교육 및 사전에 숙지하여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
 - 종사자 간 식사, 모임, 회의 등을 할 때에도 개인방역수칙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
- 출·퇴근 시간, 식사시간 교차 실시(유연근무제, 점심시간 시차 운영 활용)
- 실내·외 프로그램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해당 공간의 4㎡당 1명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 좌석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준수(띄워 앉기, 가림막 등 포함)

● 시설 휴관(원) 시 조치

- 휴관(원) 시, 취약계층 긴급 돌봄서비스 제공 및 연계
 - * 거리두기 단계 관계없이 시설별 긴급 돌봄서비스 방안 마련, 시설 운영 중지 시 빈틈없는 서비스 제공 조치
 - * 아동(도시락, 식사지원 등), 노인(안부전화, 도시락 등), 장애인(활동지원) 등
 - 코로나19 유행대비 사회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동대응지침('20. 2. 21.) 및 시설별 개별지침 활용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41(2020.02.21.) 참조

●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사항

-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의심환자는 격리실에 격리, 전용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기
-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 보건소 도착 전,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는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개인 보호구 착용 및 손위생 철저히 준수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시·도(보건소) 지시사항에 따라 선별 진료소 및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며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 입소자가 이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격리공간에서 보건소 담당자가 검체 채취함
- (의심)환자의 이송 이후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알코올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장소를 소독
- (의심)환자와 접촉한 입소자·종사자에 대한 모니터링(「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서식 2 작성)

Ⅲ.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별 대응 지침

- 의심환자와 접촉한 종사자는 의심환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하며 의심환자의 검사결과 음성이면 업무 복귀
 - 의심환자와 접촉한 입소자는 의심환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인실에 배치하고 의심환자의 검사결과 음성이면 해제
 - 단,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만일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시,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에 연락토록 조치
- * 밀접접촉자를 돌보거나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직원은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개인 보호구 착용 및 손위생 철저히 준수

● 행정사항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배제 시 복무기준 관련
 - (유급휴가 처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종사자에 대하여 치료·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처리(‘20.1.30. 시달)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배제 시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대상시설에 우선 투입(‘20.1.29. 공문시행)
- 주간활동서비스 수급자격 결정을 위한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로 대체 가능

거리두기	구분	주요 내용
1단계 (운영유지)	방역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미준수 시 이용 제한) •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뇌병변·발달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마스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이용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공간의 4㎡당 1명 범위 내에서 실내·외 프로그램 운영 가능 • 프로그램에 따른 식사 등은 띄워 앉기, 가림막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공간에서 좌석 간 1m 이상 이격이 가능하면 제공 • 비대면서비스 병행 및 시설 이용 시 시간제 운영 또는 사전예약제 권장 • 실내에서 식사 등 음식물 취식 금지, 물 등 음료는 개인별로 섭취 가능 ※ 식당 등 식사 제공 공간에서는 식사 가능, 테이블간격 1m 이상 유지

거리두기	구분	주요 내용
1.5단계 (운영유지)	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특성에 맞게 제한적으로 외출·외박 가능(방역 조치) ※ 외출 후 증상 확인 및 모니터링 강화 • 1일 인원을 통제하여 면회 실시 ※ 거리두기 단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외출·외박지역 및 면회자 제한 가능
	방역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시설·활동을 통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 •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이용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공간의 4㎡당 1명 범위 내에서 실내·외 프로그램 운영 가능하나, 격렬한 신체 활동 자제 • 고위험군 시설의 경우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 운영 • 실내에서 식사 등 음식물 취식 금지, 물 등 음료는 개인별로 섭취 가능 ※ 식당 등 식사 제공 공간에서는 식사 가능, 테이블간격 1m 이상 유지
2단계 (운영유지)	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적으로 외출·외박 가능(방역 조치)하나, 대상 지역을 제한 가능 ※ 외출 후 증상 확인 및 모니터링 강화 • 1회 참석 인원을 통제하여 면회 실시 ※ 거리두기 단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외출·외박지역 및 면회자 제한 가능
	방역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이용 인원을 50% 이하로 제한하여 운영(이용시설)
	이용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시간대 프로그램(서비스) 대상을 이용 정원의 50% 이하가 되도록 조정 (이 경우 종사자를 포함하여 최대 100인을 넘을 수 없음)하며 격렬한 신체 활동 금지 • 실내에서 식사 등 음식물 취식 금지, 물 등 음료는 개인별로 섭취 가능 ※ 식당 등 식사 제공 공간에서는 식사 가능, 테이블간격 1m 이상 유지 • 전 시설 시간제·사전예약제 운영 원칙
2.5단계 (운영유지)	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출·외박 원칙적 금지 ※ 수업을 위한 등교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만 외출·외박 가능 대면 면회 금지, 비접촉·비대면 면회 실시 종사자에 대한 격일제 근무 등 유연근무 실시 권장
	방역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이용 인원을 30% 이하 또는 해당 공간의 8㎡당 1명 범위 내로 강력하게 제한(이용시설)
2.5단계 (운영유지)	이용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시간대 프로그램(서비스) 대상을 이용 정원의 30% 이하 또는 해당 공간의 8㎡당 1명 범위 내로 조정(이 경우 종사자를 포함하여 최대 50인을 넘을 수 없음)하며 격렬한 신체 활동 금지

Ⅲ.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별 대응 지침

거리두기	구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하되, 개별 시설별로 인근의 확진자 현황, 감염 가능성, 방역조치 현황, 방역에 용이한 건축물 구조인지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하여 운영 유지 여부 결정 ※ 운영 중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유지대책 마련
	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출·외박 원칙적 금지, 외부 출입 인원 통제 ※ 수업을 위한 등교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만 외출·외박 가능 대면 면회 금지, 비접촉·비대면 면회 실시 종사자에 대한 격일제 근무 등 유연근무 실시 권장
3단계 (운영중지)	방역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원칙
	이용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을 중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돌봄서비스 및 지자체장이 지정한 필수 서비스 제공
	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출·외박 전면금지, 외부 인원 출입 금지, 비접촉·비대면 방식을 제외한 면회 금지 종사자에 대한 격일제 근무 등 유연근무 실시

●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 직원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하지 않기
- 직원의 좌석 간격 2m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
- 출·퇴근 시간 및 점심시간 교차 실시(유연근무제, 점심시간 시차 운영 활용 등)
-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 공간 일시 폐쇄
- 집단 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

●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비스

- 소득지원
- 안전 및 권익보장 지원
- 주거지원
- 기타 서비스사항이 존재하나 하단에 표기되지 않은 개별 서비스

* 세부내용은 부록 장애인 코로나19 안내서 등 95페이지 참조

3 일상생활 지원

(기본원칙)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돌봄공백 최소화

● 장애인 활동지원

(기본원칙) 코로나19로 인한 추가적인 지원계획 수립 및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1) 긴급활동지원

-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않던 장애인이 자가격리, 복지관 휴관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할 경우 긴급활동 급여 제공(월 120시간)

2) 24시간 활동지원

-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 24시간 활동지원 급여 제공

3) 보호자 부재 시 지원

-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월 20시간) 추가 제공

4) 방학 중 특별급여

-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학 중 활동지원 추가 지원(월 20시간)

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 제공기관 휴관 시 활동지원서비스 대체 이용조치 및 비용청구조건 완화로 제공기관의 정상 운영 지원
- 주간활동 1인 서비스 운영

Ⅲ.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별 대응 지침

6)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한시허용

- 코로나 19로 인하여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족에 의한 급여제공 한시허용
- *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등록하여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 지급

7) 활동지원 대상 완화

- 병원에 입원한 확진자, 활동지원 비수급 장애인에 대해서도 활동지원 제공 토록 완화

8) 공공돌봄

-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돌봄중단 위기 가구 방문, 거주 시설내 확진자 발생시 거주자 분산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확진자 돌봄 위해 동반 입소 등

9) 병원 내 돌봄인력 지원

- 고령확진자 등의 신체수발을 위한 돌봄인력 모집 및 사전교육 실시 후 중수본에 연계, 지자체는 필요시 중수본에 돌봄인력 지원 요청, 중수본은 인력 매칭
- * 식사, 목욕, 화장실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고령 및 장애인 확진자 돌봄

10) 활동지원사 등 전문인력의 정기적 건강체크를 통한 건강인력보증제 실시

- 코로나 19 관련 장애인이 안전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지원사에 대한 건강인력 보증제* 실시
- * 코로나 선별검사 수검, 정기적 건강체크 및 보건서약서 작성, 마스크 착용 준수 등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돌봄지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기본원칙) 지원인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1) 방역수칙 준수

- 지원인력에 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기관에서도 지원인력 의심 및 확진시 대체인력을 미리 마련하여 서비스 공백이 없도록 할 것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기본원칙) 지원인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1) 방역수칙 준수

- 각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도우미에 대한 방역수칙을 교육하며, 도우미 의심 및 확진시 대체인력을 미리 마련하여 서비스 공백이 없도록 할 것

2) 원격교육 대비

- 원격교육의 경우 각 대학별 대책을 미리 마련하며, 세부 사항은 교육부 및 관련 서비스 담당 기관과 논의할 것

● 특별교통수단 운영

(기본원칙) 지원인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확진자(격리대상자) 이송 및 기존 미이용자 관련 대책 마련

1) 방역수칙 준수

- 운영인력에 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기관에서도 운영인력 의심 및 확진시 대체인력을 미리 마련하여 서비스 공백이 없도록 할 것

2) 확진자(격리대상자) 이송 방안 마련

-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 병원 및 관련 시설 이동에 대한 대책 마련
- 운전자와 확진자(격리대상자)가 분리된 특별교통수단 마련 혹은 기존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방역 등 조치 철저

3) 기존 미이용자 관련 대책 마련

- 기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지만 병원 이용이 잦은 장애인(혈액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에 대한 이동시 지원대책 마련

4 건강 및 의료 지원

(기본원칙) 건강 및 의료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돌봄공백 최소화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기본원칙) 방역수칙 준수, 격리공간 확보 및 서비스공백 예방

1) 환자(유증상자) 발생 시 예방조치

- 장애인 거주시설의 감염으로 운영중지될 경우 임시시설, 활동지원 인력 확보, 주변 생활치료센터, 병원 등 지역 대응체계 마련
 - * 임시시설 : 1인1실, 화장실 등이 갖추어진 주거 환경지원 및 인력 재배치
- **(시설통제)** 보건소 역학조사 완료까지 시설 외부자 뿐만 아니라 내부 이용자 및 종사자 출입 통제
- **(소독실시)** 시설은 환경부에서 승인한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유증상자)가 머물던 장소를 소독 실시하며, 방역전문업체에 소독을 의뢰하여 소독하는 것을 권장
 - * 평상시에도 급식소, 화장실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 및 표면 등을 하루 1회 이상, 자주 접촉하는 곳은 하루 2회 이상 청소, 소독을 실시하며 소독제는 환경부가 승인한 소독제를 사용하나 만약 이 소독제를 구하지 못할 때는 차아염소산 나트륨 희석액(1,000ppm)을 사용하고 부식할 수 있는 표면 등은 70% 이상 알콜소독제를 이용함
- **(배식 권장)** 시설 내 입소자간 접촉 최소화를 위하여 급식소 이용 보다는 각 거주 실별로 배식을 실시하도록 하며, 여건상 불가할 경우 층별 또는 구역별로 구분하여 급식소 이용시간 및 동선 분리
 - * 생활시설과 타 시설 급식소 공동이용 금지(배식 이용)

- **(촉탁의 검진)** 코로나 발생기간 동안 생활시설에서는 주1회 이상 촉탁의가 시설을 방문하여 감염병 예방과 관련한 이용인·종사자 교육 및 방역 관련 자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각 시설에서 실시 1.5단계 이상 지역은 비대면 방식 가능)

* 촉탁의가 없는 경우에는 연계 병·의원 또는 지역 보건소(지소, 진료소) 협조 요청

2) 환자(유증상자) 및 접촉자 격리

- **(공간분리)** 환자발생을 대비하여 사전 가능한 1인실 다수 확보*, 환자(유증상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 따라 접촉자 분류 및 분리(식사, 위생공간)

* 지자체 시설 담당자는 격리공간 확보여부 파악

- 격리공간 부족시 시·도별 접촉자 격리시설 이송

- **(이송지원)** 외상장애인 환자(유증상자)는 보건소 구급차 및 119, 기타 장애인 환자(유증상자)*는 특별교통수단

* 기타 장애인 중 별도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유증상자)를 이송할 경우 의료장비를 갖춘 구급차 이용 및 119에 협조 요청

- **(행정지원)** 자치단체는 격리시설 1:1 전담관리 및 의식주 부족시 지원

* 자치단체는 필요시 분리공간 마련 및 추가 예산 지원(국비)과 전담관리 실시, 시설이 부족한 경우 지역(인근지역) 청소년 수련관 등 임대 활용

상황별 분류	이용자 감염 시	종사자 감염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상 등 이동 성향이 낮은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유증상자)는 이송조치(병원) • 동일실 접촉자는 잠복기 등을 고려, 임시생활시설로 이송 - 단, 임시생활시설이 부족하여 이송이 어려운 경우 시설외부에 분리공간을 마련하여 격리 • 종사자는 자가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 종사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 받거나 접촉한 이용자는 잠복기 등을 고려, 임시생활시설로 이송 - 단, 임시생활시설이 부족하여 이송이 어려운 경우 시설외부에 분리공간을 마련하여 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 등 이동 성향이 많은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과 생활특성 고려 시 이용자 및 종사자간 밀접접촉으로 인해 시설 내 전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임시생활시설 이송(임시생활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시설 내 격리공간에서 격리) 	

3) 대체인력 확보

- **(인력지원)** 종사자 업무배제시 돌봄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대상시설에 우선 투입
 - 자치단체 담당자는 대체인력 제공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인력확보 추진
 - * 시설 및 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관별 퇴직자 또는 사회봉사자 등의 예비인력 풀을 사전에 작성하여 환자 발생 시 활용하며, 장애인식 개선교육 등 선이수 요청

4) 선제검사 실시

- **(시설 내 검사)** 종사자 대상 PCR 1주 간격으로 실시
- **(지자체 역할)** PCR관련 내용 점검 및 안내(지도)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기본원칙) 지원인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1) 방역수칙 준수

- 지원인력에 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기관에서도 지원인력 의심 및 확진시 대체인력을 미리 마련하여 서비스 공백이 없도록 할 것

2) 비대면 상담 인정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관련 비대면 상담 인정
- 코로나 블루 등과 관련된 기타 심리지원사업 및 기관 필요시 연계

3) 바우처 기간 연장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관련 바우처 기간 연장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기본원칙)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상황에 따른 사업 실시

1)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권고 실시

-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각 지자체별 실시(미실시) 권고
- 기존 사업(단체여행)과 달리 개별 가족 단위 자율적 여행 실시 등 대책 마련

5 그 밖의 지원

가. 보육 및 교육 지원

(기본원칙) 보육 및 교육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돌봄공백 최소화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아이돌보미 우선지원,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장애인 자동차 운전 교육 지원, 정보화 방문교육 서비스

(기본원칙) 지원인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상황에 따른 사업 실시

1) 방역수칙 준수

- 지원인력에 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기관에서도 지원인력 의심 및 확진시 대체인력을 미리 마련하여 서비스 공백이 없도록 할 것

2) 바우처 사용기간 연장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의 경우 가용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여 사용 가능

3)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권고 실시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시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서비스 선택적 실시(미실시) 권고
 - * 장애인 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별 단계에 따른 실내 체육시설 사용 불가시 해당 서비스 미실시 권고 등
- 대규모 교육 등 지양

나. 고용 지원

(기본원칙) 고용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기본원칙) 시설 내 인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고용유지지원금 및 방역물품 지원

1) 방역수칙 준수

- 시설 내 인력에 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기관에서도 지원인력 의심 및 확진시 대체인력을 미리 마련하여 서비스 공백이 없도록 할 것

2)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 지자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불요불급한 운영비(예; 업무추진비, 원부자 재구입비, 수용비 등)등의 절감을 통해 시설이 경영여건이 허락하는 한 휴관 기간 중 휴업수당 등을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지원
- 시설이 지급한 임금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통해 보전 받을 수 있도록 관할지역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적극 안내
- 경영여건이 크게 열악한 시설은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준(평균 임금의 70%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수당 지급'에 관한 승인을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께 안내

3) 방역물품 및 방역장비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방역 장비 지원
 - * 열화상카메라, 손소독기, 소독방역기 등 지원(시설당 4백만원)

● 근로지원인 제도,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기본원칙) 시설 내 인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비대면 교육 실시

1) 방역수칙 준수

- 시설 내 인력에 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기관에서도 지원인력 의심 및 확진시 대체인력을 미리 마련하여 서비스 공백이 없도록 할 것

2) 비대면 교육 실시

- 근로지원인 교육 관련 비대면 교육 실시

다. 문화 및 여가 지원

(기본원칙) 문화 및 여가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의 비용 감면, 습지보호지역 이용료 면제, 자연휴양림 등 이용료 면제, 문화바우처사업(통합문화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기본원칙)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상황에 따른 사업 실시

1) 방역수칙 준수

-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에 대한 방역수칙을 준수

2)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권고 실시

- 서비스 제공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서비스 선택적 실시(미실시) 권고
 - * 산림복지서비스 등 제공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실내인원 제한 등 안내
- 대규모 교육 등 지양

CHAPTER.



장애인 코로나19 안내서 등

1 장애인 코로나19 안내서(3판, 배포용)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이 알아야할 필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자료로 인쇄 배포, 온라인 배포, 수어영상제작 등 가능,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다음 내용을 추가, 수정, 삭제하여 사용가능

- 장애인, 노인 등이 코로나19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정의, 관련 용어 설명

목차	주요내용
• 코로나19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정의 ◦ 감염경로
• 코로나19와 관련된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용어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밀감염, 잠복기,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접촉자, 기저질환, 음성/양성, 완치, 선변진료소, 국민안심병원, 생활치료센터, 자가격리, 동선, 방역, 역학조사, 예방접종센터)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단계 설명
• 코로나19에 걸리면 어떻게 아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증상
• 코로나19에 걸린 것처럼 아프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발현 시 신고방법
•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으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예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 씻기, 마스크 사용법 등 개인위생관리 ◦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등
•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수칙, 검사순서
• 코로나19로 격리해야 한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 지원 신청(이동지원, 일상생활 지원) ◦ 격리 수칙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으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 통보 ◦ 예방접종 절차
• 코로나19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스 대처방법, 상담전화
• 코로나19 관련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제공 홈페이지, 보건소 상담전화(1339)
• 코로나19 대비 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상황 대비 기록 카드(이름, 기저질환, 복용약 등) ◦ 응급대비 사전 체크리스트(확인표)



코로나19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19 안내서

함께 이겨 냅시다 (3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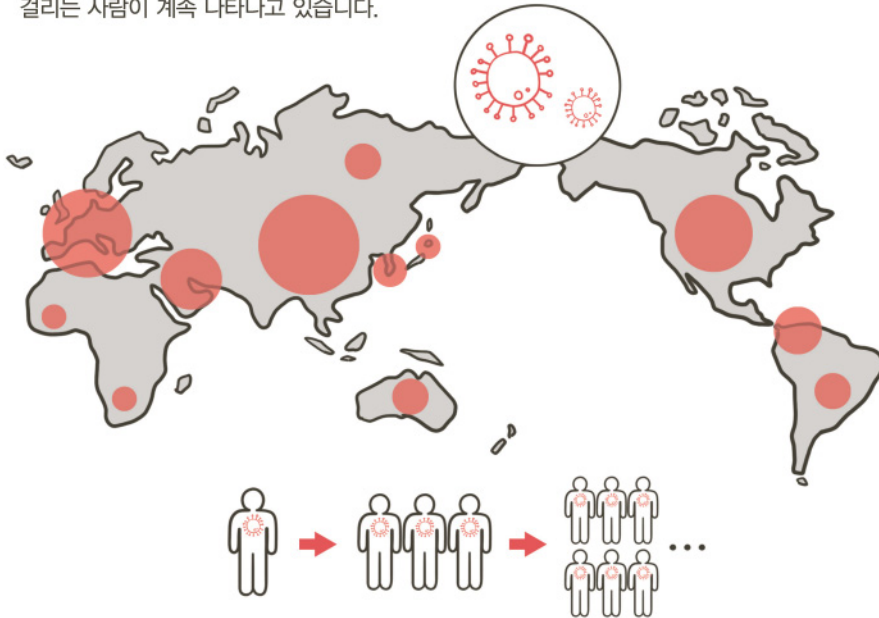


이 안내서는 코로나19에 대해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입니다.

코로나19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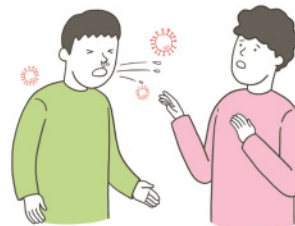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줄인 말입니다.

코로나19는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면서 널리 퍼지는 병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생긴 후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2020년 6월 현재에도 코로나19에 걸리는 사람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 어떻게 코로나19에 걸리나?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의 침, 콧물이 다른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면 병이 옮습니다.
 침, 콧물은 눈, 코, 입 등을 통해서 몸에 들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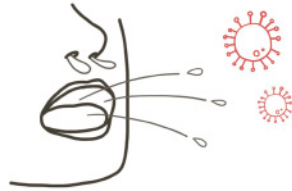


코로나19와 관련된 말

코로나19에 관한 여러 가지 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비말감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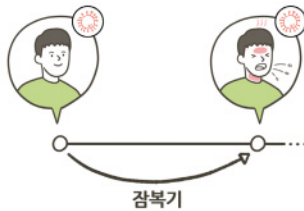
“코로나19는
비말감염 됩니다.”



비말감염은 입, 코에서 나오는
침과 콧물이 튀면서
병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잠복기

“코로나19는
잠복기가 길게는
14일까지라고 합니다.”



병에 걸린 후부터 열이나
기침이 나는 등 아프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아프기 전에는 병에 걸린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확진자

“오늘까지 확진자는
○○○○명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을 말합니다.
확진자인지 아닌지는
나라에서 정한 병원의 의사가
알려줍니다.

의사환자

“**의사환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지역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확진자와 만난 사람 중 열, 기침 등으로 아픈 사람을 말합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에 다녀온 사람, 여러 명의 확진자가 나온 곳에 갔던 사람 중 열, 기침으로 아프거나 의사가 코로나19로 의심된다고 한 사람입니다.

접촉자

“○○번 환자의 **접촉자**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확진자와 만났거나 확진자가 갔던 곳을 비슷한 시간에 방문했던 사람을 말합니다. 혹시 코로나19에 걸렸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저질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리면 더 위험합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는 오래된 병을 말합니다. '지병'이라고도 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천식, 결핵 등)

양성/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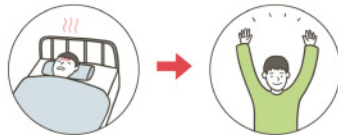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양성 →	코로나19 ○
음성 →	코로나19 ✕

병에 걸린 사람은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음성'으로 나옵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확진자로 분류됩니다.

완치

“확진자 중 ○○명이
오늘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이 치료 후 다 나은 것을 말합니다.

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따로 진료를 받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지 않기 위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안심병원

“○○병원은
국민안심병원으로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아플 때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정한 병원입니다. 코, 목, 폐 등 호흡기 환자와 다른 환자들을 따로 진료합니다.

생활치료센터

“확진자 중에서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생활치료센터로
옮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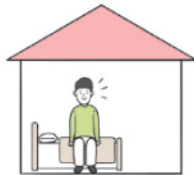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열, 기침 등이 심하지 않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입니다.

자가격리

“확진자를 만난 사람은
우선 **자가격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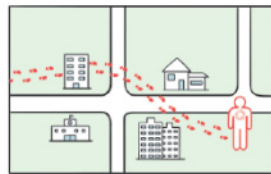
- 시설격리 : 격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나라에서 마련한 곳에서 함께 지내는 것
- 병원격리 :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 지내는 것



확진자를 만났거나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옮기지 않도록 집 또는 방에서
혼자 지내는 것입니다.

동선

“오늘 발생한 OO구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합니다”



확진자가 간 장소, 이용한
교통수단 등 그 사람이 다닌
모든 곳을 말합니다.
확진자의 동선은
지역 시·군·구청에서 알려줍니다.

방역

“확진자가 방문한 곳은
철저히
방역하였습니다.”



소독약 등을 뿌려서
남아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를 없애고
깨끗이 하는 일을 말합니다.

역학조사

“확진자가 왜
코로나19에 걸렸는지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이유를
찾는 조사입니다.
언제 누구를 만났고
어디에 갔는지 등
여러 가지를 살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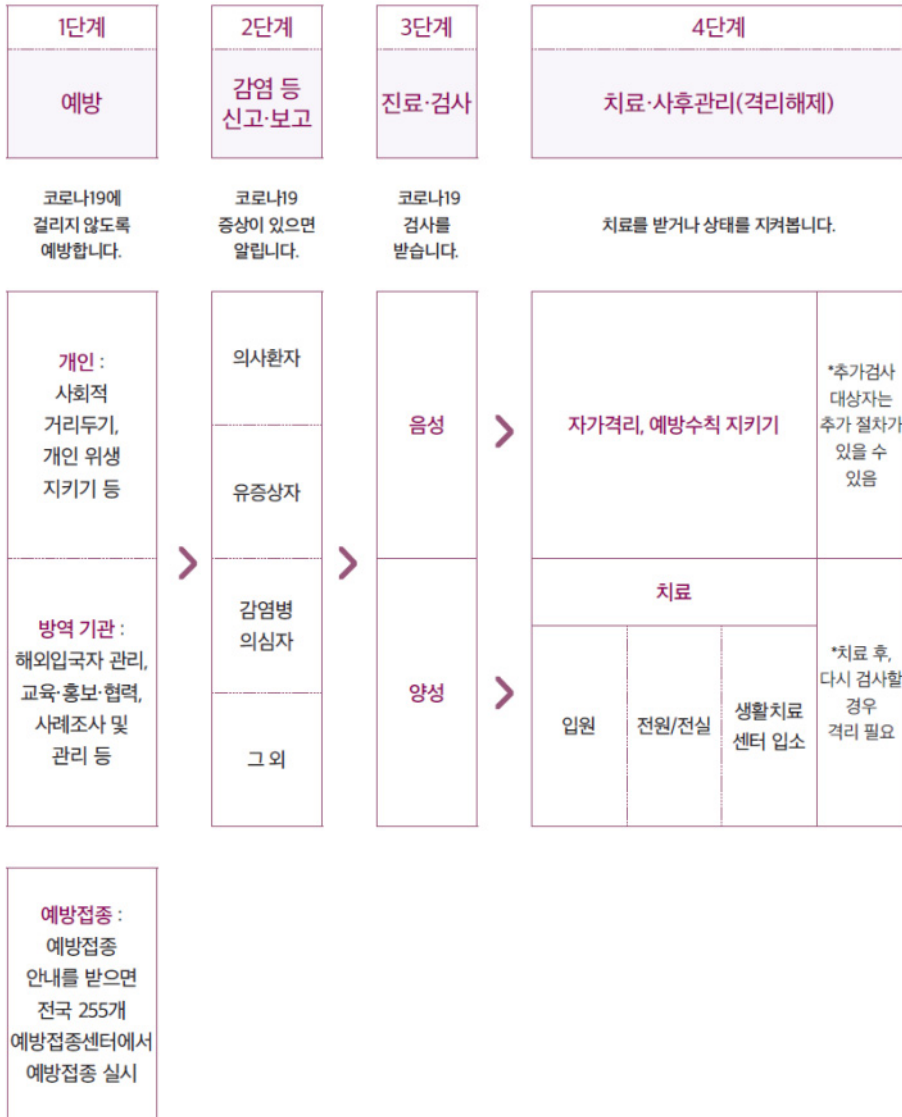
예방접종센터

“코로나19
예방 주사를 맞기 위해
예방접종센터에 갑니다.”



코로나19 걸리지 않도록
예방주사를 맞으러 가는 곳으로
전국에 255개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렇게 대처합니다.



코로나19에 걸리면 어떻게 아픈가?

코로나19에 걸리면 보통 열·기침이 나고, 심하면 숨 쉬기 어렵습니다.

● 이렇게 아플 수 있습니다

열이 난다.
(체온계로 잰을 때,
37.5도가 넘는 경우)



몸살처럼 몸이 쑤시고 아프다.



기침을 한다.
가래가 나온다.



목이 아프고 코가 막히거나
콧물이 난다.



숨 쉬는 게 힘들고 불편하다.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



아픈 곳이 없는데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

코로나19에 걸린 것처럼 아프다면?

1. 먼저 ☎1339나 지역보건소에 전화합니다.

-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
☎1339 카카오톡 상담, ☎129 콜센터 영상수어상담을 이용합니다.
- 혼자 설명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활동지원사가 대신 설명합니다.

"목이 아프고 열이 많이 나요."



2. 자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전화로 알려야 할 내용>

- 이름, 나이, 사는 곳 등
- 현재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 외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지
- 확진자를 만났거나 확진자가 갔던 곳에 방문했는지
- 확진자 여러 명이 나온 곳과 관련이 있는지
- 지원이 필요한지(이동지원, 의사소통지원, 활동지원)

3. 신고 후에는 안내에 따릅니다.

- 필요한 경우 자가격리하거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코로나19를 더 조심해야 하는 사람



65세가 넘는 사람



임산부



다른 병을 갖고 있는 사람
(고혈압, 당뇨, 암, 폐렴,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

* 만성질환 : 한번 걸리면 잘 낫지 않고 오랫동안 아픈 병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으려면?

코로나19는 다른 사람에게 옮거나 옮길 수 있고
아직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조심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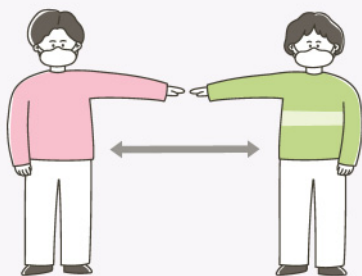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깨끗이, 자주 씻습니다.
(30초 넘게)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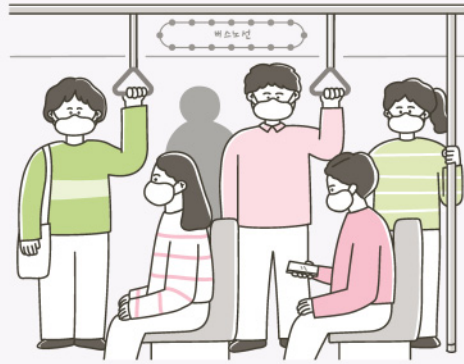
사람들과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두 팔 거리 정도 떨어져 있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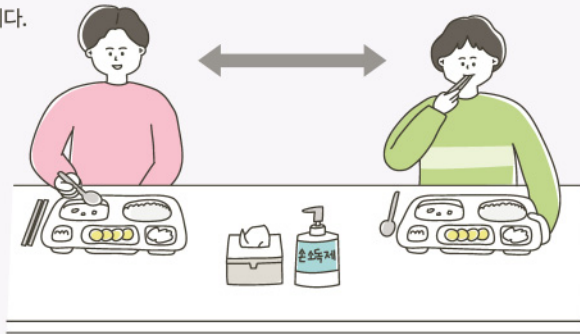
꼭 필요할 때만 외출하고 집에서 지냅니다.
- 아프면 3일에서 4일 정도 집에 머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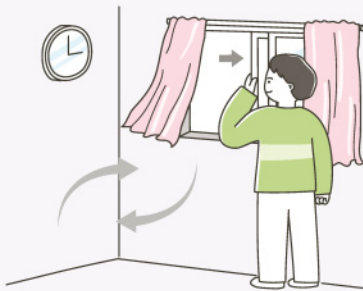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곳,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씩니다.
(지하철, 버스, 마트, 쇼핑몰 등)



회사, 학교 등에서 생활할 때도
사람들과 가까이 있지 않도록 합니다.
-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음식은 각자 덜어 먹습니다.



집, 사무실 등에서는 하루 2번 문을 열고
공기를 통하게 합니다.
(자주 하면 더 좋습니다.)



손이 자주 닿는 물건은 여러 번 소독합니다.
- 휠체어 등 보조기기도 자주 소독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아요

● 집, 사무실 소독하기

- 손이 자주 닿는 곳을 일주일에 1번 넘게 소독합니다.
* 전화기, 리모컨, 손잡이, 문고리, 탁자,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등
- 약국에서 파는 소독제, 소독제가 묻은 휴지 등을 사용합니다.
- 아이들의 입이나 손에 닿는 장난감 등은 소독 후에 깨끗한 천으로 한 번 더 닦고 말려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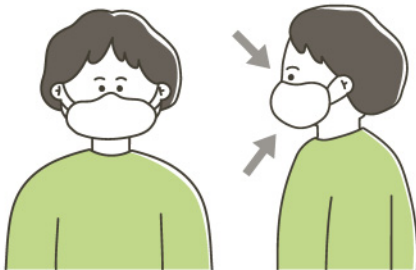
● 올바른 손 씻기

<p>두 손바닥을 마주 대고 문지릅니다.</p>  <p>1</p>	<p>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지릅니다.</p>  <p>2</p>	<p>손등과 손바닥을 마주 대고 문지릅니다.</p>  <p>3</p>
<p>엄지손가락을 반대편 손으로 쥐고 돌려주면서 문지릅니다.</p>  <p>4</p>	<p>손각지를 꺾어서 손가락끼리 문지릅니다.</p>  <p>5</p>	<p>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손톱 밑을 깨끗이 합니다.</p>  <p>6</p>

●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마스크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손을 깨끗이 합니다.



마스크를 쓸 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빈틈이 없게 합니다.



마스크를 쓰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않습니다.

마스크는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 마스크 안쪽이 더러워지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 1회용 마스크는 오래 사용하면 안 됩니다.
(면 마스크는 깨끗이 빨아 씩습니다.)
- 더러워진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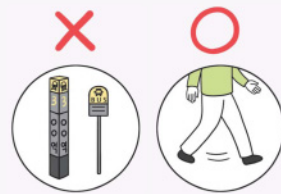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가거나 돌아올 때 도움을 요청합니다.(☎1339)

●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갈 때 지켜야 할 것

반드시 마스크를 씩니다.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벗지 않습니다.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고
걸어가거나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 코로나19 검사 순서

👉 접수와 검사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은 필요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수어 상담, 시각 지원판/의사소통 도움 · 그림 글자판 등)



1. **접수하기** : 검사를 신청합니다.



2. **차례 기다리기** : 마스크를 쓰고 차례를 기다립니다.



3. **자가문진표* 쓰기** : 자가문진표에 적힌 질문에 사실대로 답을 적습니다.

* 자가문진표 : 나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를 묻는 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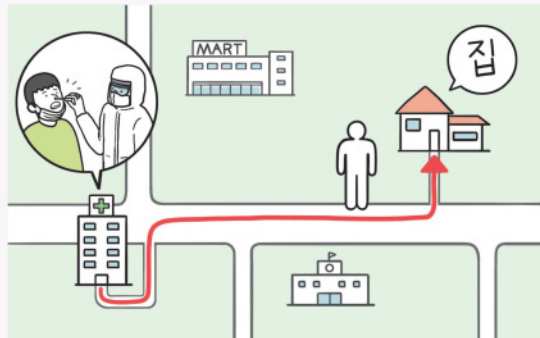
4. **검사받기** : 의사에게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말하고, 질문에 대답합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습니다. (코나 입 속에 도구를 넣어 검사합니다.)



5. **교육받기** : 검사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안내받고
당분간 지켜야 할 것에 대해 교육받습니다.

● 코로나19 검사 후 지켜야 할 것

검사 후 다른 곳에 들르지 말고
곧바로 집으로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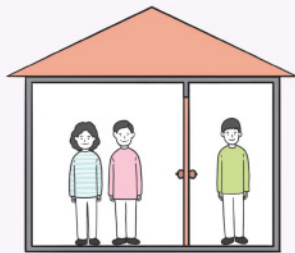
집에 가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씩니다.
갈 때는 걸어가거나 자동차를 이용합니다.
(대중교통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출하거나, 다른 사람과 만나면 안 됩니다.



가족에게 옮기지 않도록 집에서도 마스크를 씩니다.
격리할 때 지켜야 하는 규칙에 따라 지냅니다.



기침, 콧물이 나는 등 건강 상태가 더 나빠지면
보건소 또는 ☎1339로 연락합니다.



검사결과가 '음성'이라도 위 내용은 지켜야 합니다. (아프기 시작한 날부터 14일 동안)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코로나19 치료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19로 격리해야 한다면?

●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

- **이동 지원** : 격리 장소까지 이동할 때 도움을 받습니다.
- **일상생활 지원** : 격리해서 지내는 동안 필요한 것을 지원받습니다.
(활동지원, 돌봄지원, 생활에 필요한 물건 지원 등)

● 격리해 지낼 때 알아둘 것



1. 코로나19가 퍼진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돕습니다.

-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면 물어보는 것에 대해 자세히 대답합니다.
- 가족관계, 만났던 사람, 갔던 곳, 이용했던 대중교통 등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2. 확진자가 될 경우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합니다.

- 확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대비 카드'(21쪽)를 적어둡니다.
- 격리 중인 사실을 가족, 친구, 활동지원사 등 가까운 사람에게 알립니다.



3.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을 신청합니다.

- 지역 읍·면·동주민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4. 자가격리 하는 사람을 위한 앱을 사용합니다.

- 자가격리 하는 사람이 건강 상태를 기록하는 앱입니다.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받기 : 플레이스토어(삼성, LG 휴대폰)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라고 검색해 내려받습니다.

● 자가격리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것



1.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 병원 등 외출을 꼭 해야 할 때는 먼저 보건소에 연락해 알립니다.

※ 자가격리해야 할 사람이 외출하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2. 나만의 공간에서 혼자 생활합니다.

-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공기를 맑게 합니다.
- 밥은 혼자 먹습니다.



3. 가족 등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 여러 대화하거나 몸이 닿지 않도록 합니다.
- 화장실, 세면대를 혼자 사용합니다.
(여럿이 쓸 때는 사용 후 락스 등으로 소독합니다.)



4. 수건, 그릇, 수저 등 물건을 따로 사용합니다.

- 빨래나 설거지도 따로 합니다.



5. 손을 자주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 **자가격리 중인 사람과 함께 지내는 사람이 지켜야 할 것**
(가족, 활동지원사 등)



자가격리 중인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자가격리 중인 사람과 모든 물건을 따로 사용합니다.



항상 손을 깨끗이 하고 마스크, 비닐장갑을 꼭 씩습니다.



주로 쓰는 공간이나 가구, 물건은 자주 닦고 소독합니다.
자주 문을 열어 공기를 통하게 합니다.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당분간 일을 쉬는 게 좋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격리를 마칠 때까지)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나 자신이
열, 기침이 나지 않는지 자주 확인합니다.
아프면 바로 ☎1339로 연락합니다.

코로나19 예방주사를 맞으려면?

● 코로나19 예방주사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맞습니다.

- 보건소에서 예방주사를 맞으라는 연락이 옵니다.
- 예방주사를 언제 맞을지 예약하면,
예방주사 맞을 장소(예방접종센터)를 정해서 알려줍니다.
- 예약한 날짜에 안내받은 예방접종센터로 가서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 예방접종센터에 가면

- ① (접수/이름확인) 안내해주는 사람에게 이름, 생일을 이야기 합니다.
- ② (예진표 작성) 종이(예진표)를 받으면 이름, 생일, 자신의 상태 등에 대해 적습니다.
- ③ (대기) 다 쓴 종이(예진표)를 가지고, 기다리는 곳에서 차례를 기다립니다.
- ④ (예진) 의사와 만나서 질문에 대답합니다.
- ⑤ (접종) 주사 맞는 곳에서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 ⑥ (접종 확인) 갖고 있던 종이(예진표)를 안내해주는 사람에게 줍니다.
- ⑦ (반응 확인/귀가) 주사를 맞은 후 아픈 곳이 있는지 잠시 기다렸다가,
안내 해주는 사람이 가도 된다고 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방접종센터



코로나19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불안하고 무서워요!
- 사람들을 못 믿겠어요!
- 답답하고 짜증나요!
- 기운이 없고 모든 것이 귀찮아요!
- 머리가 아파요!
- 소화가 잘 안 돼요!



● 이렇게 해봐요

믿을 만한 정보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전화나 문자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해진 시간에 잠을 충분히 자고, 식사를 제때 먹습니다.



스트레칭 등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인터넷 하기, TV 보기, 게임하기 등 집에서 할 수 있는 즐거운 활동을 찾아서 합니다.



필요하면 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상담전화

- 확진자, 가족 ☎02-2204-0001 (국가트라우마센터)
- 격리 중인 사람, 일반 국민 ☎1577-0199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코로나19 관련 연락처

● 코로나19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ncov.mohw.go.kr
인터넷에서 “코로나19” 검색합니다.

● 우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 동선을 알고 싶다면

- 각 지역 시청/군청/구청 홈페이지

● 코로나19가 의심되면?

- 전화상담 ☎1339 / 지역 보건소
- 카카오톡 상담(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대비 카드

■ 코로나19 대비 카드

이름	
장애유형	
기저질환 (없을 경우 표시 안 함)	<input type="checkbox"/> 당뇨 <input type="checkbox"/> 고혈압 <input type="checkbox"/> 고지혈증 <input type="checkbox"/> 심혈관 <input type="checkbox"/> 뇌혈관 <input type="checkbox"/> 암 <input type="checkbox"/> 만성폐질환 <input type="checkbox"/> 신장질환 <input type="checkbox"/> 정신질환 <input type="checkbox"/> 간질환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저질환 개수 () 개
먹고 있는 약 (없을 경우 표시 안 함)	약의 종류 () 한 번에 먹는 양 () 알) 하루에 약을 먹는 횟수 () 회) 특이사항 ()
주로 가는 병원·의원	병원·의원 이름 주치의 연락처
사용하고 있는 보조기기	

■ 비상 연락망

번호	이름	관계	연락처
1			
2			
3			
4			
5			
6			

■ 코로나19 대비 체크 리스트(확인표)

나에게 해당되는 곳에 V 표시 하세요.

확인 내용	예	아니요
1. 당신은 아플 때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고 보살펴줄 수 있는 사람 (가족, 활동지원인 등 보호자)이 있습니까?		
→ ('아니요'에 표시했다면) 아플 때 돌봐줄 가까운 사람을 정해둡니다.		
2. (평소 먹는 약이 있다면) 당신은 앞으로 2주 동안 먹을 만큼의 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 ('아니요'에 표시했다면) 다니는 병원(의원)의 의사에게 만일을 위해 필요한 약을 미리 충분히 달라고 요청합니다.		
3. 당신은 2주 동안 집에서만 지낼 수 있을 만큼 생활용품과 먹을 것이 충분히 있습니까?		
→ ('아니요'에 표시했다면) 자가격리 할 때 필요한 생활용품, 먹을 것을 미리 사둡니다.		
4. 당신은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의 도움 없이 혼자 이동할 수 있습니까?		
→ ('아니요'에 표시했다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할 때 지원해달라고 합니다.		
5. 당신은 말하고 듣거나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 ('아니요'에 표시했다면) 선별진료소, 병원에 가면 수어나 의사소통 지원을 해달라고 합니다.		

2 시각 지원판/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 사용 매뉴얼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의료진용 「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시각 지원판」 사용 매뉴얼(3판)

2020.12.24.

-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용 '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과 '시각 지원판'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치매 환자, 외국인** 등이(임시)선별 진료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나 글자를 이해하여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표현하는 검사대상자는 의료진과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검사대상자를 위해서는 선별 진료소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과 '시각 지원판'을 장애인 시설과 가정 등에 배포하여 선별진료소 방문 전에 미리 보고 오시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 '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은 AAC도구의 한 종류입니다. AAC란 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의 약자로서 말과 글 등의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모든 전략과 방법을 말합니다.
- 본 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시각 지원판'은 선별진료소용과 임시선별진료소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선별진료소

- **대기실:** 시각 지원판(안내)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합니다.
- **접수:** 의료진용 책상에 시각 지원판(접수) 1, 2를 부착합니다. 검사대상자 책상에는 **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접수)**를 부착해서 사용합니다.
- **검사실1:** 시각 지원판(검사실1) 1, 2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합니다. 검사대상자 책상에는 **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검사실1)**을 부착해서 사용합니다.
- **검사실2:** 시각 지원판(검사실2)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합니다.
- **검사실3:** 시각 지원판(검사실3) 1, 2, 3, 4, 5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합니다.
- **안내지:** **시각 지원판(안내지)** 앞, 뒤를 양면 프린트해서 나눠드립니다.

2. 임시선별진료소


- **대기실:** 시각 지원판(안내)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합니다.
- **접수:** 코로나19 검사 설문지를 나눠드리고 체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검사대상자 책상에는 **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접수)**를 부착해서 사용합니다.
- **검사실3:** 시각 지원판(검사실) 1, 2, 3, 4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합니다.
- **안내지:** **시각 지원판(안내지)** 앞, 뒤를 양면 프린트해서 나눠드립니다.

3. 활용 방법


- **시각 지원판:** 의료진이 **그림이나 글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을 합니다.**
(예: 의료진이 "머리를 뒤로 해요"라고 말하면서 그림이나 글자를 가리킵니다.)
- **의사소통 도움 그림 글자판:** 검사대상자가 **의사소통 판에 있는 그림이나 글자를 가리키면 적절하게 반응합니다.**

선별진료소 안내


시각지원판(안내)




1. 기다려요




기다려요.
2. 접수해요



접수해요.
3. 대기실에서 기다려요




대기실에서 기다려요.
4. 진료실로 들어가요




진료실로 들어가요.

진료실에서 상담하고 열 재요.



진료실에서 상담하고 열 재요.



코 면봉 검사, 입 면봉 검사, 가래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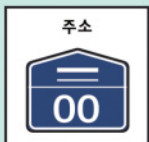

코 면봉 검사, 입 면봉 검사, 가래 검사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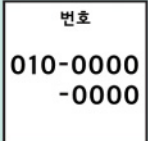

시각지원판(접수1)



1. 인적사항




1.  
신분증 주세요.

2.     ?
현재 사는 주소가 맞아요?



 
주소 말해 주세요.

3.   
핸드폰 번호 말해주세요.

4.   ?
무슨 일 하세요? (현재 직업)

   ?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이전 직업)

2. 여행력

1.  해외  갔어요 ?

해외에 갔었어요?

 어디  갔어요 ?

어디로 갔었어요?

아시아 	유럽 	중동 	미주 
---	--	--	--

2.  코로나  집단 발생지역  갔어요 ?




코로나 집단 발생 지역 갔었어요?

3.  코로나 환자  만났어요 ?

코로나 환자 만났어요?

3. 증상

시각지원판(접수3)

1.    ?



현재 어떻게 아파요?

2.  ?  ?  월  일에도   ?

언제부터 아팠어요?

어떻게 아팠어요?

3.   ?   ?

약 먹었어요?

해열제 먹었어요?

4.   ?  ?  ?

담배 피워요?

얼마나 많이 피워요?

5.    ?

혈압, 당뇨, 폐렴 있어요?

6.  ?

임신하셨어요?

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코로나19-접수) 1

종이와 펜 주세요	다시 말해 주세요	모르겠어요	네	아니요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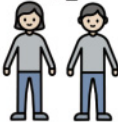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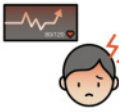




1	2	3	4	5	전화번호		010
6	7	8	9	0	월	일	전
					개월(달)	주	개비

ㄱ	ㄴ	ㄷ	ㅏ	ㅑ
ㄹ	ㅓ	ㅕ	ㅓ	ㅕ
ㅗ	ㅛ	ㅜ	ㅗ	ㅛ
ㅝ	ㅟ	ㅡ	ㅜ	ㅠ
ㅝ	ㅎ	띄어쓰기	ㅡ	ㅣ

코로나	사람		이사 갔어요	쉬고 있어요
해외	집단 발생지역		만났어요	갔었어요
열나요	기침나요	숨쉬기 힘들어요	가슴이 답답해요	목이 아파요
몸살(근육통) 있어요	으슬으슬 떨려요 (오한)	콧물 나요	머리 아파요 (두통)	설사 해요
고혈압	저혈압	당뇨	폐렴	약 먹어요

검사할 때 몸이 흔들릴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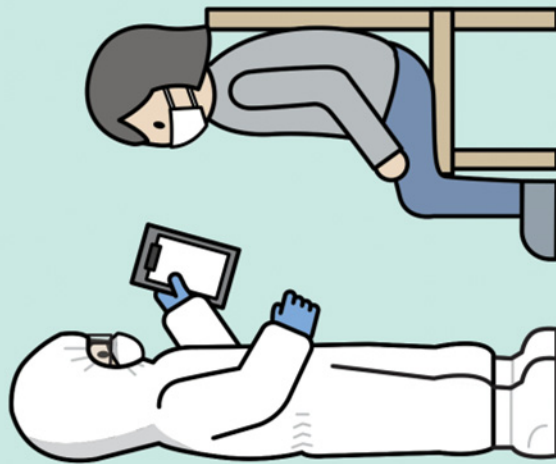
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코로나19-접수) 2

<p>종이와 펜 주세요</p> 	<p>다시 말해 주세요</p> 	<p>모르겠어요</p> 	<p>네</p> 	<p>아니요</p> 
<p>집</p> 	<p>학교</p> 	<p>주간보호센터 (평생교육센터)</p> 	<p>가요(다녀요)</p> 	<p>쉬어요</p> 
<p>코로나</p> 	<p>사람</p> 	<p>만났어요</p> 		
<p>해외</p> 	<p>집단 발생 지역</p> 	<p>몸이 흔들릴 수 있어요</p> 		
<p>열나요</p> 	<p>기침나요</p> 	<p>숨쉬기 힘들어요</p> 	<p>가슴이 답답해요</p> 	<p>목이 아파요</p> 
<p>몸살 있어요 (근육통)</p> 	<p>으슬으슬 떨려요 (오한)</p> 	<p>콧물 나요</p> 	<p>머리 아파요(두통)</p> 	<p>설사해요</p> 
<p>고혈압</p> 	<p>저혈압</p> 	<p>당뇨</p> 	<p>폐렴</p> 	<p>약 먹어요</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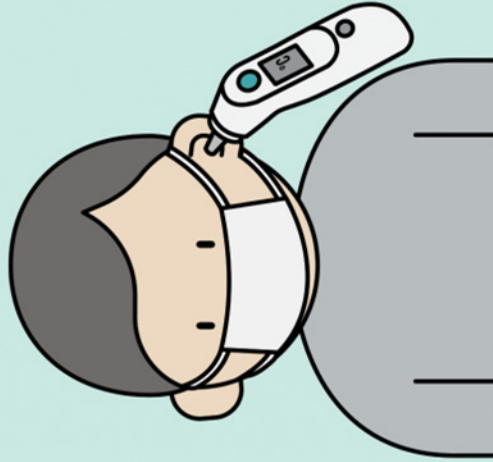
시각지원판(진료소) 1

진료실 1

1. 상담해요.



2. 열 재요.




상담해요

시각지원판(진료소1) 2

1.    ?

현재 어떻게 아파요?

2.   ? 월 일에도   ?

언제부터 아팠어요?

어떻게 아팠어요?

3.   ?   ?

약 먹었어요?

해열제 먹었어요?

4.    ?

혈압, 당뇨, 폐렴 있어요?

5.   ?

검사할 때 몸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열 재요



1.



귀 보이게 해 주세요.

2.



의사 선생님이 귀에 열 재요.

시각지원판(진료소2) 1

진료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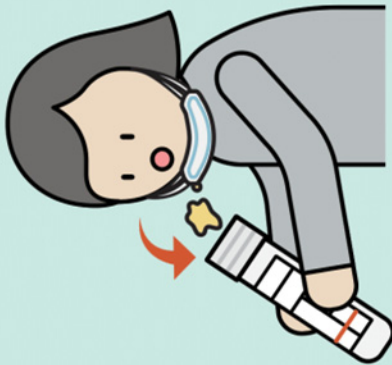
1. 코 면봉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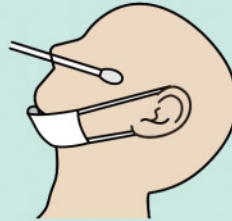
2. 입 면봉 검사



3. 가래 검사



코 면봉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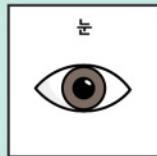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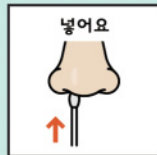
머리를 뒤로 해요.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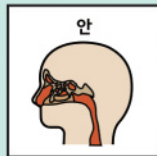
눈 감아요.

3.



의사 선생님이 면봉을 코에 넣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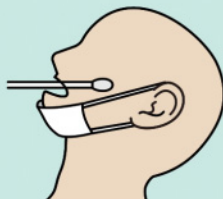
4.



면봉으로 코 안을 문질러요.

입 면봉 검사

시각지원판(진료소2) 3



1.  마스크  아래  내려요

마스크를 아래로 내려요.

2.  머리  뒤로 해요


머리를 뒤로 해요.

3.  입  벌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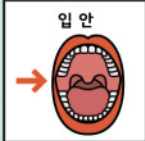

입을 벌려요.

4.  아~  소리를 길게 내요

아~ 소리를 길게 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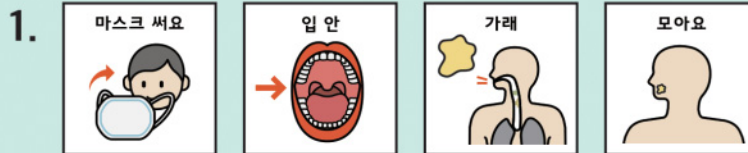
5.  의사 선생님  면봉  입  넣어요

의사 선생님이 면봉을 입에 넣어요.

6.  면봉  입 안  문질러요

면봉으로 입 안을 문질러요.

가래 검사



마스크를 쓰고 입 안에서 가래를 모아요.



통에 가래 뱉어요.



코, 입 면봉 검사 중에 가래 생기면



통에 가래 뱉어요.

검사 후

시각지원판(진료소2) 5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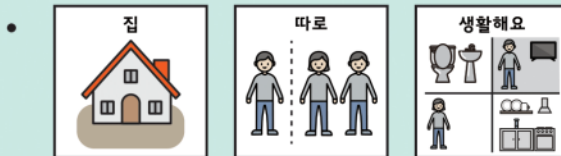


결과는 내일 핸드폰 문자로 받으실 거예요.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집에 있어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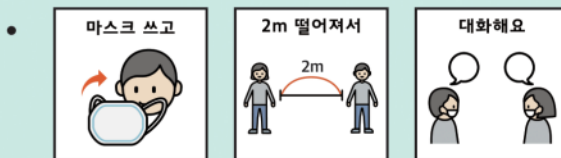


집에서는 따로 생활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자요.

같이 밥먹고 같이 자면 안 돼요.



마스크 쓰고 2m 떨어져서 대화해요.

시각지원판(진료소2) 5
 뒤

1

화장실이 1개면

소변 뉘요

대변 뉘요

물 내려요

소변, 대변 보고 물 내려요.

락스

변기

변기 주변 1m

청소해요

락스로 변기와 변기 주변 1m를 청소해요.

10분

환기

다른 사람

화장실

들어와요

10분 환기 후에 다른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올 수 있어요.

2

화장실이 2개면

따로 화장실 써요.

버스

지하철

안 돼요

버스나 지하철 안 돼요.

집

걸어서 가요

자전거

자동차

택시

타요

집에 걸어서 가요. 자전거, 자동차, 택시 타고 가요.

자동차

뒷좌석

대각선

앉아요

자동차 뒷좌석 대각선에 앉으세요.

3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 코로나19 대응 안내

● 소득지원 - 변동사항 없음

번호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코로나19 대응 조치
1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전체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읍·면·동에서 장애인복지 카드 발급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전체	장애인 자가 운전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주차 요금 감면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3	유선통신요금 감면	전체	시내·시외·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4	이동통신요금감면	전체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35% 할인	읍·면·동 즉시처리	
5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	전체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50%, 보호자1인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30%)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6	초고속인터넷 요금할인	전체	월 이용료 30% 감면	읍·면·동 즉시처리	
7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전체 (시·청각)	TV 수신료 전액 면제	읍·면·동 즉시처리	
8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심한장애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읍·면·동 즉시처리	
9	전기요금할인	심한장애	여름철(6~8월) 월 20천원, 기타계절 월 16천원 한도 감액	읍·면·동 즉시처리	
10	지역난방에너지 복지 요금 지원	심한장애	월 5천원 지역난방비 지원	읍·면·동 즉시처리	
11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전체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심한 장애: 월 62만 7,000원, 심하지 않은 장애: 월 55만1,000원) 지급	읍·면·동 신청	

번호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코로나19 대응 조치
12	장애아동수당	전체(만18세 미만)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최대 20만원 지급	읍·면·동 신청	
13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이외	만 18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수당 4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2만원 지급	읍·면·동 신청	
14	장애인연금	추가심사	근로능력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읍·면·동 신청	
15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전체(만 19세 이상)	자립자금을 최대 3%의 저금리로 대출(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등)	읍·면·동 신청	
16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지정	심한장애	경기, 훈련, 지도 중 사고로 장애발생 시 유공자 지정 및 연금·수당 지급	문화체육관광부 문의	
17	소득세 인적 공제	전체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국세청 신청	
18	장애인 특수교육비소득공제	전체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국세청 신청	
19	장애인의료비 공제	전체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국세청 신청	
20	장애인차량 취득세 (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심한장애 (시각·지체·청각·신장·뇌전증·간·안면·장루·요루)	장애인용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종전 등록세포함), 자동차세 면제	관할 시·군·구 세무과 문의	
21	상속세 상속공제	전체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관할 세무서 문의	
22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산정시 특례 적용	전체	등록장애인 중 지역가입자에 한해 기본 1구간을 적용하여 건강보험료가 적게 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번호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코로나19 대응 조치
23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전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24	장애인 수입물품 관세 감면	전체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 관세 면제	통관지 세관 문의	
25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전체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의 부과율을 0%로 적용하여 보장구 구입 지원	별도신청 없음	
26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전체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검사수수료할인(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교통안전공단 문의	
27	증여세과세기액불산입	전체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기액에 미포함	관할 세무서 문의	
28	차량구입시 도시철도 채권구입 면제	전체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시·군·구청차량등록기관에 신청	
29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심한장애	승용자동차 1대에 특별소비세 면제	관할 세무서 문의	
30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심한장애	지자체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관할시·군·구청차량등록기관에 신청	

● 일상생활지원 - 현행 유지(대면서비스에 대한 일부 변동)

번호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코로나19 대응 조치
1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보행상 장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지원	읍·면·동 즉시처리	
2	장애인가족 양육지원 (휴식지원프로그램)	전체(만 18세 미만)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프로그램 지원 및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읍·면·동 신청	
3	장애인 활동지원	전체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읍·면·동 신청	코로나19로 인한 추가적인 지원 수립 및 활동지원인력 방역수칙 준수 이용자가 자가격리자에 포함되어 자가격리 된 경우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이 가능하도록 급여 확대
4	장애인가족 양육지원(돌봄서비스)	심한장애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읍·면·동 신청	양육지원인력 방역수칙 준수
5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심한장애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정부지원 90%)	읍·면·동 신청	
6	승용자동차 LPG사용 허용	전체	LPG 연료 사용 차량 또는 구조 변경한 등록장애인용 승용차 1대에 LPG연료 사용 허용	관할 시·군·구청 문의	
7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전체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산전, 산후관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등 지원	해당지역 시·도립장애인 복지관에 신청	가사도우미 인력 방역수칙 준수

번호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코로나19 대응 조치
8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전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편의, 교수 학습지원(대필 등), 수어통역, 속기지원 등 학습 편의 제공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 센터 또는 학생지원 부서에 신청	장애대학생 도우미 인력 방역수칙 준수
9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전체 (시·청각)	시·청각 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시청자미디어 재단 (1688-4596) 문의	
10	특별교통수단 운행	심한장애(보행상 장애)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원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문의	코로나19 확진자/격리대상자 등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마련

● 건강 및 의료 지원 - 현행 유지(대면서비스에 대한 일부 변동)

번호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코로나19 대응 조치
1	장애 검사비 지원	전체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읍·면·동 신청	
2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전체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4만 원, 기타 일반장애 1만 5,000원) 지급	읍·면·동 신청	
3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전체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읍·면·동 신청	
4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전체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6세 미만)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군·구에 문의	시설 내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 사전 돌봄이 가능한 격리공간 확보 종사자 대상 PCR검사
5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전체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읍·면·동 신청	
6	지역사회중심재활(CBR)	전체	재활운동, 2차 장애관리 등 프로그램제공	보건소에 신청 및 읍·면·동에서 의뢰가능	
7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전체(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에게 상담 서비스 지원	읍·면·동 신청	지원 기관 및 인력 방역수칙 준수
8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전체(뇌병변·지체) 심한장애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건강보험),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의료급여)	(일반)건강보험 공단 신청, 읍·면·동 신청 (의료급여대상) 읍·면·동 신청	

번호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코로나19 대응 조치
9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심한장애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읍·면·동 신청	서비스제공인력방역수칙 준수
10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전체(청각)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 이식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읍·면·동 신청	
11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경감	전체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 및 과표재산이 13,500만원 이하인 장애인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심한 30%, 심하지않은 20%)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12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전체(지적·자폐성)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 (역사, 문화기관방문 등)	사업수행기관에 신청 (시도 문의)	기존 단체여행에서 가족별 개별여행 등으로 지원 가능
13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취약가구 인정	심한장애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1~3급인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인 경우 취약가구로 인정하여 완화된 기준 적용	보훈지청에 신청	
14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심한장애	30%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15	예방접종피해보상	전체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정도에 따른 보상금 지급	관할 보건소 문의	
16	구강 보건진료 비급여 지원	전체(뇌전증·뇌병변)심한장애(지체·정신·지적·자폐성)	장애인 구강진료비 지원(심한장애: 비급여의 30%, 심하지 않은 장애: 비급여의 10%)	전국 9개 권역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17	장애인산소치료요양비 검사면제	심한장애(호흡기)	호흡기장애인에 대해 산소포화도 검사 없이 처방전발급을 통해 요양비 지원	읍·면·동 신청	

● 안전 및 권익보장 지원 - 현행 유지

번호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코로나19 대응 조치
1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및 장애인등록증 점자스티커 발급	전체(시각)	시각장애인용 점자주민등록증 및 장애인 등록증점자스티커 발급	읍·면·동 신청	
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심판청구 비용지원	전체(지적·자폐성)	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원)	시·군·구 신청	
3	근로능력평가 면제	심한장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근로능력평가 면제	읍·면·동 문의	
4	5·18 민주유공자 유족 중 생활·부양능력 없는 장애인	전체	생활능력/부양능력 여부 신체검사를 통해 교육·취업·의료서비스 등 감면·할인 제공	보훈지청 문의	
5	국가유공자 유족 중 생활·부양능력 없는 장애인 인정	전체	생활능력/부양능력 여부 신체검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	보훈지청 문의	
6	무료법률 구조제도 실시	전체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	
7	장애인 병역판정 검사(병역) 면제	전체	병역판정 검사(병역) 면제	병무청 문의	
8	장애인의 전기사용상의 응급조치 지원	전체	전기사용의 불편해소나 안전 확보를 위해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전기안전공사에서 응급조치 지원	한국전기안전공사콜센터	
9	장애재판정 미이행자 병역판정검사 유예	전체	장애재판정 미이행자 병역판정검사 유예	병무청 문의	
10	중증장애인의 병역면제 및 제2국민역 처분	전체	병역면제 및 제2국민역 처분	병무청 문의	
11	특허 출원료 및 기술평가 청구료 감면	전체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등 면제 및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특허청 문의	

번호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코로나19 대응 조치
12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전체(시각)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제공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13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 작성 및 제공	전체(시각)	점자형 국민소환투표공보 작성 및 제공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14	점자형 주민투표공보 작성 제공	전체(시각)	점자형 국민투표공보 작성 및 제공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15	병역판정 검사 이후 장애등록시 신체검사 면제	전체 (신체·정신)	병역판정검사 이후 장애등록 시 신체검사 면제	병무청 문의	
16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활동비용지원	전체(지적·자폐성)	공공후견인 선임(월 1인 150천원, 2인 300천원, 3인 이상 400천원)	공공후견법인에서 지급	
17	국가공무원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편의제공	전체(지체(상·하지)·뇌병변·시각·청각)	확대문제지, 시험시간연장, 수어통역사배치 등 시험응시자에게 편의지원 제공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 문의	
18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후보자의 범위	전체(청각·언어)심한장애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에게 선거운동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활동보조인 지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의	
19	보행상장애인 주정차 단속배려	보행상 장애	보행상 장애인의 주정차 단속위반 등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 등 배려	복지카드 제시	
20	산재보험유족보상의 연금수급자격 기준	심한장애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유족(장애인)에게 수급자격 부여	근로복지공단 문의	
21	의료분쟁 조정의 직권개시	심한장애	의료분쟁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일정요건(장애발생, 사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조정절차 개시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문의	
22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전체장애	장애인 가정 내에 화재·가스감지기와 활동센서, 응급호출기 설치	지역센터 신청(읍면동 대행)	
23	질서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	심한장애	과태료 50% 감경	관할 시·군·구청 문의	

● 주거지원 - 현행 유지

번호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코로나19 대응 조치
1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지원	전체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주택의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지원 (가구당 최대 380만 원)	읍·면·동 신청	
2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입소 이용료지원	전체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입소 시입소비용 중 매월 28만 6000원 지원	시·군·구 신청 후 시·군·구에서 해당 시설에 지원	
3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전체(지적·정신)심한 장애(뇌병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알선 및 주거안정 지원	읍·면·동 신청	

● 보육 및 교육 지원 - 현행 유지(대면서비스에 대한 일부 변동)

번호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코로나19 대응 조치
1	사랑의 그린 pc보급	전체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중고 컴퓨터를 정비해 무료로 제공	읍·면·동 신청	
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전체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급	읍·면·동 신청	
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전체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등)	읍·면·동 신청	서비스 제공인력 및 기관 방역수칙 준수
4	발달재활서비스	전체(뇌병변·지적·자폐성·언어·청각·시각, 만18세 미만)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서비스 지원	읍·면·동 신청	서비스 제공인력 및 기관 방역수칙 준수
5	장애아동 양육수당	전체 (만0~5세)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아동 최대 20만원 지급	읍·면·동 신청	
6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전체 (만0세~12세)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장애아 보육료의 50% (월 23만 2,000원) 지급	읍·면·동 신청	
7	장애아 보육료 지원	전체 (만0세~12세)	영유아(만 0~12세) 보육료 지원	읍·면·동 신청	
8	언어발달지원	전체(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부모가 장애를 가진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에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제공	읍·면·동 신청	서비스 제공인력 및 기관 방역수칙 준수
9	아이돌보미 우선지원	심한장애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읍·면·동 신청	제공인력 방역수칙 준수

번호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코로나19 대응 조치
10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전체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교육 등의 교육서비스 제공	교육기관신청 (시·도문의)	교육인력 및 기관 방역수칙 준수방역수칙 준수
11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	심한장애	부모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	어린이집 신청 및 임신육아종합 포털사이트 온라인 신청	
12	장애인 자동차 운전 교육 지원	심한장애	자동차운전교육(운전면허 학과, 기능, 도로주행 무상교육) 지원	면허시험장 및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 문의	방역수칙 준수
13	정보화 방문교육서비스	심한장애	정보화능력 제고를 위한 가정방문 정보화교육 지원	한국정보진흥원 문의	방역수칙 준수

● 고용 지원 - 현행 유지(대면서비스에 대한 일부 변동)

번호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변경사항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전체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시·군·구 상담	고용유지지원금(고용장려금)을 활용한 고용유지 권고 직업재활시설 내 방역수칙 준수
2	장애인일자리 지원	전체	공공형 일자리 제공	읍·면·동 신청	
4	취업알선 지원	전체	장애인 구인·구직 알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5	근로지원인 지원 제도	장애인 고용법상 심한장애 (추가심사)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지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및 인사혁신처(공무원) 문의	근로지원인 방역수칙 준수 근로지원인 교육의 경우 비대면 교육 실시
6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고용법상 심한장애 (추가심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조건이나 무상으로 지원하는제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및 인사혁신처(공무원) 문의	
7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장애인 고용법상 심한장애 (추가심사)	구직등록한 15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수당 지원	장애인고용 공단에 신청	직업훈련 시설 내 방역수칙 준수
8	장기복무제대군인 자녀 지정취업	심한장애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중증장애인 등록 시, 해당 장애인이 지정한 자녀 취업지원	보훈지청 문의	
9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장애인 고용법상 심한장애	공직임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인사혁신처에 문의	
10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창업 인큐베이터 구축사업	심한장애	점포(전세보증금)지원 사업(저소득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1억 3천만도 내에서 영업점포 지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문의	
11	국가직 5,7급 공채 영어검정시험 대체	심한장애 (청각)	국가직 5·7급 공채 영어과목 검정시험 시 듣기(L/C)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별도 기준 점수 적용 대체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의	

● 문화 및 여가 지원 - 현행 유지(대면 및 현장방문 서비스에 대한 일부 변동)








번호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코로나19 대응 조치
1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전체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무료),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50%할인) 요금 감면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인원제한 실시
2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의 비용 감면	전체	산림복지시설 입장료, 사용료, 체험료 등 비용 감면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인원제한 실시
3	습지보호지역 이용료 면제	전체	이용료 면제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인원제한 실시
4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전체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20%)	복지카드 제시	
5	자연휴양림 등 이용료 면제	전체	입장료면제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인원제한 실시
6	항공요금 할인	전체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30%)	복지카드 제시	
7	문화바우처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전체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1인 1매, 연간 8만 원) 발급	읍·면·동에서 문화누리카드 신청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인원제한 실시
8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체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인당 연 10만 원) 지급,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등)에서 사용 가능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신청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인원제한 실시

4 코로나19 장애인 지원 사례 및 추진현황

1) 감염병 정보접근성 제고 코로나19 지원 사례

구분	청각·언어장애인 의사소통
수어통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관련 중앙 및 지자체 브리핑 시 수어통역 제공 (복지부-농아인협회 업무협약 체결) ○ 방송사업자 재난방송시 수어통역 및 화면해설 제공
영상수어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39 상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관리본부 1:1 카카오톡 문자 상담 지원 - 영상전화기로 가까운 수어통역센터를 통해 연계 상담 등 ○ 129 보건복지콜센터 영상 수어 상담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어상담인력 상주를 통한 영상수어상담 지원

구분	시각장애인 의사소통
음성변환출력 지원	○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관련 인쇄물 배포시 QR코드 포함

구분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의사소통
새로운 단어와 코로나19정보를 쉽게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지원판 등 코로나19 관련 주요 설명자료 배포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p>능동감시대상자</p> <p>“코로나19 능동감시대상자는 기침, 열이 나면 바로 검사를 받습니다.”</p>  <p>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높아 보건소에서 하루 2번씩 기침, 열 등의 증상이 없는지 살펴보는 사람을 말합니다.</p> </div> </div>
상징과 단어로 쉽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별진료소에 ‘의사소통 도움 그림 글자판’ 배포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진료실</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들어가요</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마스크</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아래</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내려요</p> </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진료실로 들어가요. 마스크를 아래로 내려요.</p>
	○ 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에 ‘의사소통 도움 그림 글자판’ 활용 협조

2) 이동서비스 지원 코로나19 지원 사례

구분	이동 및 생활 지원
확진자 격리시	○ 구급차 이용한 지정병원, 생활치료센터 이송 지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 전동휠체어 이용자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 코로나19 방역처리 이동체계 마련
이동제약에 따른 생활지원	○ 생필품 방문지원(자치단체) - 자가격리 장애인 생필품지원 (서울, 인천, 대구 등)
방역용품 현장지원	○ 장애인 거주시설 마스크, 손소독제 보급을 위한 국비 교부 ○ 장애인 마스크 무상보급 사업을 위해 마스크 배분



3) 감염병 예방 관리 및 필수 의료지원 강화 코로나19 지원 사례

구분	방역 및 의료지원
고위험군	○ 내부 장애인은 기저질환자로 분류, 병원 우선 격리 등 질환 특성에 따라 방역 매뉴얼 등에 반영되어 지원
필수의료 제공	○ 제3자 처방, 전화 처방 등 비대면 진료 임시 허용 ○ 감염병 의료대응체계 내에서 격리환자 투석 지원 등
방역물품 지원	○ 장애인 거주시설 마스크, 손소독제 보급을 위해 국비 지원 ○ 마스크 대리구매로 장애인 마스크 무상보급 사업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자원(총 4억)을 확보했으나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한 장애인단체(장충, 장충연, 전장연)의 협조 요청에 따라 지원

4) 돌봄 공백 방지 코로나19 지원 사례

구분	돌봄 등 지원 대책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않던 장애인이 복지관 휴관 등의 사유로 긴급돌봄이 필요할 경우 긴급활동급여 제공(월120시간) ○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 원래의 급여량과 무관하게 24시간 활동지원 급여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제공자의 범위를 한시적 확대하여 가족에 의한 돌봄도 급여 제공 ○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현장 요구를 반영하여 제공인력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또는 장애인이 동의하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의 기본적인 안전교육 이수 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부재 시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월 20시간) 추가 제공 ○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돌봄 부담완화를 위해 가족돌봄비용* 지원 대상 장애인 자녀 연령 18세 이하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급인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따른 비용보존 긴급 지원금 지급대상을 장애인 자녀의 경우 8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 ○ 가정에서 장애인 자녀 돌봄이 어려운 경우 학교에서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교 유·초·중·고·전공과 과정의 장애학생(교육부) ○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체계 구성(대구사회서비스원) 			
돌봄 지원	구분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돌봄제공자
1유형	(미확진자) 코로나19로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된(될) 자	복지시설 생활교사/정서지원, 식사도움, 장보기 및 약품대리 수령, 청소 등 일상생활 지원(8시간)	돌봄 종사자	돌봄 종사자
2유형	(미확진자) 자가격리 등으로 긴급돌봄서비스 필요하게 된 자	자가(병원)격리자에게 장보기, 물품전달 등 외부활동 지원(8시간)	돌봄 종사자	돌봄 종사자
3유형	(미확진자) 자가격리 등으로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하게 된 자	자가격리자와 함께 격리생활을 하면서 내부생활 지원(24시간)	돌봄 종사자	돌봄 종사자
4유형	(확진자) 확진자의 병원·생활 치료센터 입원으로 긴급돌봄 서비스 필요하게 된 자	확진자의 병원생활 지원(8시간) * 현장경험이 있는 요양보호사, 간병사 우선	돌봄 종사자	돌봄 종사자
5유형	(미확진자) 어린이집 이용 어린이 중 전담 의료기관의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자	자가격리자와 함께 격리 생활하면서 내부생활 지원 (어린이집이용 아동 중 격리자)	부모 또는 양육자	부모 또는 양육자

구분 **돌봄 등 지원 대책**











○ 가정 내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낮 활동 꾸러미, 생활실천표 등 보급 지원(‘20.5. 울산 등 지자체)

생활
지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을 위한 '가정 내 낮활동 꾸러미' 구성

<p>일상생활 및 신체활동</p> <p>발주일 생활실천표 10장</p>	 <p>마스크팩</p>	 <p>울남기</p>	 <p>컵받기</p>
<p>위생관리</p> <p>마스크(7매)</p>	 <p>손소독제(스프레이)</p>	 <p>울티슈</p>	 <p>치약칫솔</p>
<p>요리영역</p> <p>초코칩 쿠키 믹스</p>	 <p>수제초콜릿</p>	 <p>김치전</p>	 <p>빙소리</p>
<p>탐색영역</p> <p>뽕밭서브</p>	 <p>콩나물저메기</p>	 <p>콩나물공</p>	<p>기가 속속-노란 콩나물공</p>
<p>미술·놀이영역</p> <p>색종이(대형)</p>	 <p>컬러링북</p>	 <p>풍선3개</p>	

나의 일주일 생활 실천표

<p>1. 나는 매일 일찍 일어나요.</p> 	<p>2. 나는 글고루 음식을 먹어요.</p> 
<p>3. 나는 매일 틈틈이 운동을 해요.</p> 	<p>4. 나는 집안일을 도와줘요.</p> 
<p>5. 나는 밖으로 나갈 때 마스크를 꼭 써요.</p> 	<p>6. 나는 외출 후 손을 꼭 씻어요.</p> 
<p>7. 나는 매일 내가 좋아하는 다양한 활동을 해요.</p> 	<p>8. 나는 정해진 시간동안 컴퓨터(핸드폰)를 해요.</p> 
<p>9. 나는 매일 정해진 공부(활동)를 합니다.</p> 	<p>10. 나는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요.</p> 

5) 장애인시설 감염예방 및 서비스 유지 코로나19 지원 사례

구분	돌봄 등 지원 대책
<p>감염예방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단체 대상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방역관리지침 등 전파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이용자 및 시설 환경관리, 상황 발생시 조치 등 대비대응 계획 수립·시행 -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성을 부여 - 전담 담당자(직원 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시설 내 위생물품 비치 파악 등) 지정 -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 (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시설 소관부서- 보건소-소방서-의료기관(인근 선별진료소, 이송 병원)
<p>필수 서비스 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이용시설 휴관 권고 및 휴관 시 돌봄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필수서비스 제공을 위한 긴급돌봄 등 유지 요청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기관 휴관 시 활동지원서비스 대체 이용 조치 및 비용 청구조건을 완화하여 제공기관의 정상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청구조건 완화(3.11일) 이후 제공기관 운영 비율 증가 (3.5일 46% → 3.24일 78%) ○ 종사자가 업무 배제된 경우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대상시설에 우선 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퇴직자 또는 사회봉사자 등의 예비 인력풀 확보(장애인 관련 경력이 없을 경우 온라인 '장애이해교육' 실시)
<p>시설 이용중지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생활시설 내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이송지원 및 추가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방역, 격리시설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 북구 000) 대구 병실 부족으로 서울지역으로 최우선 이송 * (경북 칠곡 000) 방역기간 동안 음성자 이송(송정자연휴양림) 격리 * (경북 예천 000) 임시 격리공간으로 6개 경로당 분산 격리

6) 코로나19 관련 장애인 지원 추진현황 (2021.2.24.기준)

● 장애인 대상 감염병 매뉴얼 현장 활용도 제고

- (매뉴얼 추가 배포) 의료지원부서, 선별진료소 등 660개소 배포
 - * 임시선별검사소, 임시선별진료소 등 신규 추가 설치시에도 즉시 현장 배포 가능하도록 추가 배포
- (매뉴얼 현장 활용 요청) 지자체 활용 요청 및 현황 점검 실시
 - * '코로나대응지침(9-4판)'에 장애인 고려사항 등 반영

● 진단검사 및 예방접종 관련 의사소통 지원 강화

- (의사소통 도움 그림판 추가 배포) 발달·청각·시각장애인 등 대상 의사소통 도움 그림·그림판(AAC) 별도 추가 제작·배포
- (수어통역 지원) 손말이음센터 및 전국 수어통역센터 안내문 배포, 영상전화기 구비·활용 요청
- (역학조사) 손말이음센터 및 전국 수어통역센터 안내문 배포, 영상전화기 구비·활용 요청

● 지역사회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추가 조치

- (활동지원)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대상 확대 및 단가현실화
 - * 활동지원 대상 완화, 가족에 의한 돌봄 인정, 방학 활동지원 추가지원, 제공인력 자격요건 완화 등
- (긴급돌봄) 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긴급돌봄 대상자(장애인 포함)·복지시설 등에 돌봄인력 지원
 - * 가족·종사자 확진, 돌봄 제공자 자가격리 등으로 발생한 돌봄공백에 대응하여 가정·시설에 돌봄인력 지원
 - * 고령확진자 등의 신체수발을 위한 돌봄인력 모집 및 사전교육 실시 후 중수분 연계, 지자체는 필요시 중수분에 돌봄인력 지원 요청, 중수분은 인력 매칭

● **장애정도 및 특성 고려 대책 강화**

- **(마스크)**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뇌병변·발달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마스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 **(혈액투석 신장장애인 지원)** 감염 위험 이유로 혈액투석 필요 자가격리자를 기피하는 경우가 없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실시
- **(보호자 동반)**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검체 채취 및 격리시 1인 분리가 원칙이나, 보호자 동반 가능토록 조치
 - * 선별진료소, 자가격리, 병실 등 배정에서 보호자 동반 가능
- **(전담 조직)** 중수본 내 혈액투석신장장애인 지원 등을 위해 ‘특수병상팀’을 신설하여 의료지원 방안 등 논의·마련

● **장애인 확진자 지원 강화**

- **(전담 병원)** 국립재활원을 장애인 전담병원으로 지정, 의료인력 및 돌봄인력 지원, 운영 개시
 - * 10병상 개시, 23병상까지 순차 확대
- **(활동지원)** 장애인 확진자 돌봄 위해 지원 기준 완화
 - * 수급자는 퇴원시까지 일 24시간 지원, 비수급자는 일 12시간 총 10일 지원(120시간)

●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예방 및 확산방지**

- **(선제 검사)** 종사자 대상 PCR 1주 간격으로 진단 검사
- **(관리체계 확립)** 감염 발생 시 확진자·밀접접촉자 공간 분리
 - * 지자체에서 접촉자 격리 목적의 임시생활시설 운영 중(총 64개소)